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소장 부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4. 17.

사건번호 2016형제108860, 108861, 109624, 112955호, 2017형제19022, 19026,
19772, 34218, 34219, 34426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이원석 _____ (인)

검사 한웅재 _____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박근혜 (520202-2 _____ 65세)

직업 전직 대통령

주거 서울 강남구 선릉로 _____ 강남구 삼성동 _____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선릉로 _____ 강남구 삼성동 _____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23조,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5,
제127조, 제30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속여부 2017. 3. 31. 구속(2017. 3. 30. 구인)

변호인 변호사 유영하, 채명성

2. 피고인 최서원 (560623-2 [REDACTED] 60세)

직업 임대업

주거 서울 강남구 연주로 [REDACTED]

(현재 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중, 수용자번호:
등록기준지 강원 정선군 임계면 [REDACTED])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30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2016. 11. 3. 별건구속)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담당변호사 이경재)

3. 피고인 신동빈 (550214-1 [REDACTED] 62세)

직업 롯데그룹 회장

주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REDACTED]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 [REDACTED]

죄명 뇌물공여

적용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134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변호사 국민수, 이준명, 문종렬, 흥성원, 이태준, 법무법인 중부로(담당
변호사 민경철, 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 최민형)

II.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박근혜는 2013. 2. 25.부터 2017. 3. 10.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 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통화·금융·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예산지원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법률안 제출, 시행령 제·개정, 대통령 연설,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전달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2016. 12. 9.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되어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 최서원(개명 전 성명 '최순실', 이하 개명 후 성명인 최서원으로 한다, 2016. 11. 20. 구속 기소)은 피고인 박근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신동빈은 1997.경부터 2011. 2.경까지 롯데그룹 부회장, 2011. 2.경부터 2016. 4.경 현재까지 롯데그룹 회장을 맡고 있고, (주)호텔롯데를 포함한 한국 롯데 그룹 계열사의 인사, 재무, 자금, 영업, 기획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범죄사실】

검찰인지 범죄사실

I.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행

안종범(2016. 11. 20. 구속 기소)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관리·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1.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경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0. 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피고인 박근혜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피고인 박근혜가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 ~ 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4.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현대 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CJ그룹 회장 손경식,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LG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얹출 받아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고, 안종범은 위 지시를 받은 직후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최서원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얹출 받아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내용으로 요구하고, 최서원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2.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서원은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정호성은 최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라고 지시하고,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이수영,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신종필, 전경련 사회본부장 이용우, 사회공현팀장 이소원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용우 등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다'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이용우 등은 회의를 마치고 전경련 사무실로 돌아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서원은 2015. 9. 하순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 본 후 선정하였고, 2015. 10.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 이사를 '이한선'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정호성으로부터 위와 같이 최서원이 마련한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 등을 전달받고,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형수, 이사는 장순각, 이한선, 송혜진, 조희숙, 김영석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성한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 임원들에게 전화해서 임명 사실을 통지해 주어라'는 내용으로 지시한 후 재단의 조직도, 정관 초안, 임원들의 인적 사항 등을 내려주었고, 안종범은 최상복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복은 2015. 10. 22. 오후 위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이수영, 김소영, 신종필, 이용우, 이소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 대중문화산업과장 하윤진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전경련에 전달하고 10. 27. 개최될 재단 협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전무 박찬호는 2015. 10. 23. 아침에 전경련 회관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이소원은 하윤진에게 문체부의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고, 문체부 측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전달받았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3. 위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이수영, 김소영, 신종필, 이용우, 이소원 등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위 회의를 마친 후 최상목 등은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이용우, 이소원에게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 측에 전화하여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이용우와 이소원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4. 청와대 연풍문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최서원이 내정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장 김형수, 사무부총장 김성현, 전경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하였고, 2015. 10. 26. 개최될 이사회 장소를 논의하던 중 김성현은 최서원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용우 등 전경련 관계자와 최상목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재단법인 미르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김성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같은 날 오후 갑자기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승철은 박찬호, 이용우, 이소원 등에게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박찬호 등은 기준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과 최상목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이 추가한 LS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 회장의 해외출장으로 결재 곤란)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의 지시 내지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래스 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이소원 등 전경련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팔래스 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이소원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SK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이소원은 하윤진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직원인 김기강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소원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기강에게 SK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김기강은 같은 날(10. 26.) 20:07경 기안을 하였고 문체부에서는 다음 날 (10. 27.)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쳐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 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5. 10. 27. 재단법인 미르를 설립하도록 하고,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 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 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정호성으로부터 위와 같이 최서원이 마련한 임원진 명단 등을 전달받고, 같은 달 11. 및 20. 안종범에게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사무총장, 정현식 감사, 이철용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한 후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 임원 명단 등을 내려주었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화로 이승철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승철은 그 무렵 전경련 직원들을 통하여,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전경련 직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 이수영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5개 그룹은 피고인 박근혜와 안종범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 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천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현대자동차 대표 김충호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6. 1. 13.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도록 하고, 288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II.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강요

1.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강요

가.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범행

최서원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경북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그녀의 남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 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제품을 네덜란드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정호성을 통해 회사소개 자료를 피고인 박근혜에게 전달하였으나 납품이 성사되지 않자, 2014. 가을경부터 2014. 11.경까지 문화경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를 피고인 박근혜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4. 11. 하순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2014. 11. 27.경 피고인 박근혜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던 중, 김용환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내용으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김정훈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한편, 최서원은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으로부터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 상당의 사넬백 1개,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받았고, 2016. 5.경에는 피고인 박근혜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 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행

최서원은 위 I의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 재단’이라고 한다)가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르 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르 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15. 10. 7. 미르 재단 사무실 인근인 서울 강남구 선릉로 111길 38-10에 광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미르 재단의 사무부총장이자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사인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피고인 박근혜와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 22. 사이에 진행된 자신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그룹 김걸 부사장(기획조정실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회사로서 정몽구 회장의 딸 정성이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광고회사에게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 받게 하여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 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서원은 위 1의 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 재단’이라고 한다)가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기 하루 전인 2016. 1. 12.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실 인근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72길 21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TBK, 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위와 같이 케이스포츠 재단과 더블루케이가 설립되자, 그 무렵 김상률(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안종범에게 ‘문체부 2차관 김종을 케이스포츠 재단과 더블루케이 임원에게 소개시켜주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김상률과 안종범은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김종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과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을 소개시켜 주며 ‘케이스포츠 재단 사업을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김종은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 재단과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최서원에게 정부의 체육 관련 각종 정책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문건을 전달하였고, 김종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있던 최서원은 2016. 2. 경 케이스포츠 재단 과장 박현영에게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케이스포츠 재단이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최서원의 지시를 받은 박현영은 ‘케이스포츠 재단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반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시설 건립은 Nussli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더블루케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하 ‘5대 거점 사업’이라고 한다) 기획안’을 작성하여 최서원에게 보고하였으며, 최서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 기획안을 정호성을 통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으로부터 ‘5대 거점 사업’ 기획안을 받아본 다음 2016. 3. 8. 더블루케이와 Nussli의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체결 자리에 안종범과 김종을 참석하게 하였고, 같은 날 더블루케이와 Nussli는 ‘더블루케이가 소개하는 사업을 Nussli가 시공할 경우, Nussli는 총 공사대금의 5%를 더블루케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는 2016. 3. 14.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이루어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비공개 단독면담 자리에서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신동빈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신동빈과의 단독면담 이후, 안종범에게 ‘신동빈 회장과의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6. 3. 16.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건훈을 통하여 정현식으로부터 ‘5대 거점 사업’ 기획안을 받아보고, 그 후 롯데그룹 사장 소진세, 정현식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피고인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마친 신동빈은 2016. 3. 14.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피고인 박근혜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이인원은 상무인 이석환에게 정현식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며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사업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소진세 사장과 함께 잘챙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석환은 그날 저녁 정현식에게 전화를 하여 2016. 3. 17.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최서원은 피고인 박근혜와 신동빈이 면담한 2016. 3. 14. 정현식, 박현영 및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롯데그룹 측과 약속을 잡은 정현식은 2016. 3. 17.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그룹 본사를 찾아가 소진세와 이석환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현황 및 재단 운영과 관련된 협조사항을 설명하였고, 고영태와 박현영은 2016. 3. 22. 다시 롯데그룹을 찾아가 이석환에게 ‘5대 거점 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석환 등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현식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되겠느냐’는 의사를 정현식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석환에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케이스포츠 재단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롯데그룹은 2016. 4. 22. 케이스포츠 재단에 7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¹⁾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부회장 망 이인원, 사장 소진세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재단 직원인 박현영 등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박근혜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그룹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권오준에게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요구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와 단독 면담을

1) 롯데그룹은 75억 원 중 70억 원만 송금한 상태에서(하이마트 5억 원 미송금) 케이스포츠 재단으로부터 2016. 6. 9.경부터 6. 13.경 사이에 70억 원을 전액 반환 받았음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피고인 박근혜 및 안종범의 요구 사항을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사장)에게 전달하고, 황은연은 2016. 2. 24. 조성민에게 연락하여 미팅 약속을 정한 다음 2016. 2. 25. 서울 강남구 소재 포스코 서울본사 사무실에서 더블루케이 대표 조성민, 이사 고영태, 케이스포츠 재단 부장 노승일을 만났다.

한편, 최서원은 조성민 등에게 ‘포스코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가봐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고, 이들을 통해 황은연에게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하였으나, 황은연은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서원은 조성민, 노승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케이스포츠 재단 정현식, 박현영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 호텔에서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VIP께 보고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정현식, 박현영에게 말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를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서원은 2016. 3. 초순경 박현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을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P&S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권오준, 황은연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서원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광고 등 영상 연출가인 차은택 등과 함께 2015. 2. 10. 주식회사 모스코스(대표이사 김홍탁, 이하 '모스코스'라고 한다. 2015. 11. 5. 해산등기)를 설립하고 2015. 10. 7. 플레이 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 광고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서원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으로부터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를 추천받고, 측근인 김영수로부터 김영수의 배우자인 신혜성을 추천받았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추천에 따라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주식회사 케이티(대표이사 황창규, 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는 비서실장 구현모에게 지시하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7.경 신혜성을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0.경 및 2016. 1.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IMC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IMC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 줄 것을 요구하여,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박근혜는 2016. 1.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과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한 후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주식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김종(2016. 12. 11. 구속 기소)은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체육·관광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총괄하고, 문체부 산하의 공공 기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최서원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재단의 부장인 노승일과 과장인 박현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서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GKL'이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더블루케이가 GKL과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2016. 1. 22.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인 조성민에게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연락을 할 것이니 잘 듣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2016. 1. 23. 안종범에게 'GKL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GKL에 더블루케이

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KL의 대표이사 이기우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을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면서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안종범은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성민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2016. 1. 26.경 김종을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인 정현식과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 재단과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서원은 2016. 1. 28.경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인 고영태에게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통해 이기우에게 GKL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더블루케이와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기우는 'GKL의 회사규모에 비추어 더블루케이가 요구하는 위 용역계약은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최서원은 2016. 2.경 김종에게 'GKL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더블루케이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이 해결을 해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김종은 그 무렵 이기우를 만나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이기우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GKL의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김종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대신에 GKL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고, 장애인 스포츠단과 더블루케이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고, 이에 김종은 2016. 2. 25.경 조성민을 만나 ‘더블루케이가 GKL 장애인 스포츠단의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조정안을 제시하여 협상이 계속되도록 하였다.

결국 GKL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GKL 장애인 펜싱팀 소속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GKL-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GKL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GKL은 소속 선수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선수들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 김종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 및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 등 GKL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서원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최서원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피고인 박근혜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정호성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피고인 박근혜에게 영재센터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시호와 함께 만든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이재용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 실장(부회장) 최자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장충기, 제일기획 사장 김재열 등에게 그와 같은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다.

최서원은 2015. 8.경 장시호에게 자신의 측근인 김종으로부터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에서 연락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장시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위에다 한 번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박근혜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재차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5. 8. 9. 안종범에게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김재열은 2015. 8. 20. 김종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 2015. 8. 21. 최서원, 장시호의 순차 지시를 받은 영재센터 전무이사 이규혁을 만나 구체적인 영재센터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삼성전자 상무 이영국은 2015. 9. 23. ~ 24.경 영재센터 직원들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김재열, 장충기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2015. 10. 2. 삼성전자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최서원은 2016. 2. 14.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피고인 박근혜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시호를 시켜 급히 만든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위 안가에서 이재용에게 최서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같은 날 최지성, 장충기에게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장충기로부터 이재용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이영국은, 최서원, 장시호의

순차 지시를 받은 이규혁을 만나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김종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김재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삼성전자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2회에 걸쳐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CJ그룹 관련 강요미수

조원동(2016. 12. 11. 불구속 기소)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이미경은 CJ그룹 회장 이재현의 누나로서, 1995.경 제일제당에 입사하여 1998.경 제일제당 멀티미디어 사업부 이사, 2002.경 CJ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상무, 2005.경 CJ아메리카·CJ미디어·CJ엔터테인먼트 각 부회장, 2011.경부터 CJ그룹 부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특히, 2011. 3.경부터 CJ E&M 주식회사²⁾(이하 'CJ E&M'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2) 2011. 3.경 CJ그룹 계열사인 CJ엔터테인먼트 등 6개 콘텐츠 관련 계열사가 합병되어 설립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손경식은 이미경의 외삼촌으로서 삼성화재 대표이사 부회장, CJ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던 중, 2013. 7. 1.경 CJ그룹 회장 이재현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구속되자 그때부터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그룹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2005. 11.경부터 2013. 7.경 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이미경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CJ E&M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 채널 tvN의 인기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의 시사·정치 풍자코너 '여의도 텔레토비'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박근혜를 희화화하는 취지의 방송을 송출하였고, 2012. 9.경 CJ E&M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기획·투자·배급하였으며, 2013. 7.경에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창업 투자가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하는 등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3. 7. 4.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이루어진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정례 보고 직후 조원동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원동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하였다.

조원동은 피고인 박근혜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7. 1.경 CJ그룹 회장 이재현이 1,600억 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CJ그룹이 비상 경영 체제에 놓이게 된 것을 기화로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던 피해자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조원동은 2013. 7. 5.경 서울 중구 소공로 119에 있는 서울프라자 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 미팅룸에서, 피해자 손경식에게 'VIP의 뜻입니다. 이미 경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3. 7. 하순경 피해자 손경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손경식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래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CJ가 건강한 기업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색이 없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VIP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VIP 뜻이 확실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 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손경식으로부터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컨센서스가 무슨 컨센서스입니까. 그냥 쉬라는데요. 그 이상 뭐가, 뭐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재현의 구속에 이어 CJ그룹이나 피해자 이미경에 대하여 세무·공정거래 조사가 이루어 지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조원동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이미경이 CJ그룹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III. 공무상비밀누설

정호성(2016. 11. 20. 구속 기소)은 2013. 1. 6.부터 2013. 2. 24.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 소속으로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보좌하고, 2013. 2. 25.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으로, 2015. 1. 23.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현장방문 지시사항 정리 및 보고, 대통령 일정 관리, 관저 및 일반행정 업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의 접수 및 보고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사항, 메시지 전달 등의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화대로 1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호성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정호성으로 하여금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정호성은 부속비서관실에서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최서원과 공동으로 사용

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서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정호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IV. 롯데그룹 및 SK그룹 관련 뇌물 범행

1. 롯데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5. ~ 2016.경 롯데그룹 주요 현안

(1) 피고인 신동빈과 친족 간의 경영지배권 분쟁

롯데그룹은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롯데쇼핑(주), 롯데제과(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 롯데하이마트(주), 롯데케미칼(주), 롯데손해보험(주) 및 비상장회사인 (주)호텔롯데 등을 포함하여 93개 계열사로 구성되고, 각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103조 2,840억 원에 이르는 세계 서열 5위의 대규모 기업집단(2016. 4. 1. 기준)으로, 총괄 회장 신격호와 피고인 신동빈, 피고인 신동빈의 형인 부회장 신동주 등 총수 일가가 일본 소재 (주)광운사를 지배하고, 총수 일가 및 (주)광운사 등이 일본 소재 (주)롯데홀딩스를 지배하며, (주)롯데홀딩스 및 (주)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일본 L계열 투자회사 등이 국내 (주)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주)호텔롯데 등이 다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를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하는 형태로서 총수 일가가 일본 (주)롯데홀딩스

및 국내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호텔롯데를 통해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총괄회장 신격호는 일본 롯데그룹과 국내 롯데그룹을 총괄하여 경영하면서 1996.경 신동주에게 일본 롯데그룹, 피고인 신동빈에게 국내 롯데그룹의 경영 실무를 나누어 맡기던 중, 2014. 12.경 일본 롯데그룹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일본 (주)롯데홀딩스 이사직을 포함해 일본 내 26개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신동주를 해임하였다.

한편, 총괄회장 신격호는 2015. 7. 15. 일본 (주)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 신동빈을 2015. 7. 27. 중국 투자 대규모 손실 등 국내 롯데그룹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해임하였고, 신동빈은 이에 반발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7. 28. 일본 (주)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신격호를 해임하는 등 2015. 7.경부터 피고인 신동빈과 신동주 사이에 롯데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으며, 2015. 8. 4.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단이 피고인 신동빈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 신동빈은 경영 지배권 분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내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호텔롯데는 일본 (주)롯데홀딩스가 지분율 19.07%, 일본 (주)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L계열 투자회사가 지분율 73.2%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 (주)롯데홀딩스의 (주)호텔롯데에 대한 실질적 지분율은 92.27%에 이르며, 신동주가 일본 (주)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주)광운사의 최대주주이므로³⁾, (주)호텔롯데에 대한 피고인 신동빈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0.경 신동주가 신격호로부터 (주)광운사 주식 1주를 매수하여 (주)광운사에 대한 지분율이 '50%+1주'가

3) 2015. 12. 31. (주)호텔롯데 감사보고서

되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⁴⁾ 롯데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격화되고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각종 민·형사 분쟁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롯데그룹이 일본 롯데그룹 관계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영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경부터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를 롯데그룹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5. 8. 18.경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롯데 자금흐름, 지배구조 등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자료요청에 대한 강한 메시지와 위닝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경 일본 (주)광윤사, 일본 (주)롯데홀딩스 등이 총수 일가와 무관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롯데그룹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⁵⁾, 국세청은 2015. 7.경부터 (주)대홍기획, (주)롯데리아, 롯데푸드(주), 2016. 2.경부터 (주)호텔롯데, 2016. 3.경부터 롯데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및 자금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신동빈은 경영지배권을 확보·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기업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2015. 8. 11. 대국민사과를 통해 (주)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종국적으로는 롯데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으며 이에 7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공표하였다.

(2)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후 특허 재취득 등 사업연장

4) 신격호가 신동주에게 (주)광윤사 주식 1주를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신동빈은 일본에서 (주)광윤사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5)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 2016. 5. 27. (주)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 사에 대해 허위공시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6. 9. 21. 신격호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하였음

롯데그룹은 1980. 소공동 면세점을 시작으로 월드타워 면세점, 코엑스 면세점 등 서울시내 3개 면세점을 포함하여 다수의 면세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15. 8.

13.경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라는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 이후 2015. 11. 14. 월드타워 면세점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6. 30.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영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1. 27.경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후, 2016. 1. 31.경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 당겨⁶⁾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을 제2롯데월드로 불리는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하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그룹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000억 원을 투자한 후 향후 2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있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기존 투자비 매몰, 면세점 종업원 1,300여명 대량 실직 및 고용승계, 기존 브랜드 입점계약 파기 문제 뿐만 아니라 (주)호텔롯데 매출액·영업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부문의 기업가치 평가 하락에 따라 (주)호텔롯데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면세점 특허의 신속한 재취득을 포함한 사업연장 방안에 관하여, 언론보도 활용, 직원 동원 집회·시위, 정·관계 로비 등 정부의 '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인 사장 소진세가

6) 원래 기획재정부는 2015. 12.경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에 관하여 「연구용역, 공청회 등 제도개선 준비 및 최근 사업자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시장동향을 살펴 '16. 7.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상태였음

2016. 2. 22.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등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신규특허 부여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신동빈은 2016. 3. 11. 12:0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내 '무궁화' 한식당에서 안종범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애로사항'과 '신규특허 신속 추진'을 부탁하였고⁷⁾, 그 직후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으로부터 피고인 신동빈과의 오찬 면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신동빈의 요청사항을 전달받는 한편, 안종범에게 2016. 3. 14.자로 피고인 신동빈과의 비공개 단독면담 일정을 정하고 이를 피고인 신동빈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박근혜, 피고인 최서원의 롯데그룹 추가 자금 지원 공모

피고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케이스포츠 재단이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재단 과장 박현영 등 임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것을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의 제하에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 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정호성을 통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전달하였다.

7) 당시 피고인 신동빈이 안종범과 만남을 위해 준비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미팅 자료'에는, '단기적으로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신규특허 부여, 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면세점 제도개선'이라는 측지의 요청사항이 명기되어 있음

피고인 최서원은 2016. 2. 중순경 위 사업과 관련된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부영 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에게 부영 그룹 회장 이중근을 만나 이중근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20. 안종범에게 정현식과 이중근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정현식은 2016. 2. 26. 안종범과 함께 이중근을 만나 이중근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중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위와 같이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하남 등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시설공사는 더블루케이와 연결된 Nussli가 맡는다'는 취지의 사업기획안을 전달받고, 2016. 3. 8. 더블루케이와 Nussli의 일반협정 체결 자리에 안종범과 김종을 참석하도록 지시하였고, '더블루케이가 소개하는 사업을 Nussli가 시공할 경우, Nussli는 총 공사대금의 5%를 더블루케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피고인 최서원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2016. 3. 10.경 더블루케이 회의를 통해 박현영 등에게 'Nussli건은 롯데에서 지원 할거야'라는 취지로 알려준 후, 2016. 3. 14.경 정현식 등에게 '롯데와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롯데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박근혜의 피고인 신동빈과의 2016. 3. 14.자 비공개 단독면담

피고인 박근혜는 2016. 1. 30.경 안종범에게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2.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단독면담을 준비하면서 롯데그룹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 단독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위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면담 계획에 따라 2016. 2. 18. 피고인 신동빈과 비공개 단독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신동빈 대신 부회장인 망 이인원이 참석⁸⁾하는 바람에 이를 취소한 후, 2016. 3. 11.경 안종범이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6. 3. 14.로 피고인 신동빈과의 비공개 단독면담 일정을 잡고 그 무렵 위 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 자료'를 다시 준비하였다.

위 롯데그룹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라는 제하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견의사항으로 「단기적으로 유관 정부부처 재량으로 월드타워 등 영업연장 또는 신규특허 발행,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변경」, 피고인 박근혜의 대통령 말씀 요지로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 말경 발표할 방침」,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이라는 제하에 피고인 박근혜의 대통령 말씀 요지로 「롯데그룹은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각각 28억 원, 17억 원을 출연(총 45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안종범으로부터 위 말씀자료를 보고받아 피고인 신동빈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3. 14. 14: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위

8) 당시 망 이인원이 대통령 독대를 위해 준비한 'VIP 미팅자료'에는, '6. 정부에의 견의사항' 부분에 '1) 면세점(월드타워점 직간 접교용 인력 약 2,000명) 고용 중 - 고용 안정 위한 신규 승인 절차 조속 시행'이 명기되어 있음

말씀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신동빈과 약 30분 동안 비공개 단독면담을 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 박근혜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케이스포츠 재단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신동빈은 '경영 지배권 분쟁'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 롯데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⁹⁾, 피고인 박근혜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2016년 3월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금품 공여 및 수수

피고인 신동빈은 2016. 3. 14. 피고인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마친 후 롯데그룹 본사로 복귀하여 망 이인원에게 위 단독면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망 이인원은 피고인 신동빈의 지시에 따라 상무 이석환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사업을 제안할 것인데 잘 쟁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석환은 같은 날 18:11경 정현식에게 전화하여 사업 지원을 위해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정현식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롯데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라는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이석환과 2016. 3. 17.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와 위 약속에 따라, 정현식은 2016. 3. 17. 롯데그룹 본사를 찾아가 소진세와 이석환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박현영과 고영태는 2016. 3. 22. 이석환과의 일정 약속에 따라 다시 롯데그룹 본사를

9) 피고인 신동빈이 대통령 독대를 위해 준비한 'VIP 간담회 자료'에는, '특히 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위상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찾아가 이석환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는 2016. 3. 14. 피고인 신동빈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을 마친 후 안종범에게 피고인 신동빈을 상대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을 알려주며 롯데그룹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진행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정현식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거나 정현식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롯데그룹은 2016. 4. 22. 케이스포츠 재단에 75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¹⁰⁾하고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5. 31. 까지 사이에 케이스포츠 재단에 합계 70억 원¹¹⁾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 3. 31. '면세점 제도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세청은 2016. 4. 29. 서울시내 면세점 수를 4개 추가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여, 월드타워 면세점은 2016. 12. 17.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다시 선정되었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위 II의 2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박근혜, 피고인 최서원은 공모하여,

10) 망 이인원은, 부실한 사업계획을 이유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감액을 협의하겠다는 이석환에게 75억 원 전액 지원을 제축하였음

11) 2016. 5. 25. 롯데체과㈜가 5억 원, 5. 27. 롯데카드㈜ 및 롯데건설㈜가 각 5억 원, 5. 31. 롯데케미칼㈜가 45억 원, 롯데캐피탈㈜ 및 롯데칠성음료㈜가 각 5억 원을 송금하였고, 75억 원 중 나머지 5억 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송금할 예정이었으나, 2016. 6. 7.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지원금 반환을 통보하고 2016. 6. 9. ~ 6. 13. 70억 원을 반환하였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그룹 신동빈으로 하여금 제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고, 피고인 신동빈은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70억 원을 공여하였다.

2. SK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5. ~ 2016.경 SK그룹 현안

(1)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및 사업 지속 추진

SK그룹은 1992. 워커힐호텔 면세점을 개장하여 2009.경부터 SK네트웍스(주)가 위 면세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8. 13.경 피고인 박근혜의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지시' 이후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5. 16.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1. 27.경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2016. 1. 31.경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당겨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워커힐호텔은 호텔 고유의 조망권, 카지노, 면세점에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성장동력의 상실과 기존 면세점 종업원 570명의 고용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을 바라는 상황이었다.

(2) CJ헬로비전(주) 인수·합병 추진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2015. 8. 14. 특별사면·복권 직후 SK하이닉스(주)를 통한 46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15. 11. 2. SK텔레콤(주)를 통해 CJ그룹 계열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주)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CJ헬로비전(주)는 케이블방송 업계 1위 회사로 42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SK텔레콤(주)가 CJ헬로비전(주) 인수 시 연간 4조원의 매출과 750만 고객을 확보하게 되어 유료방송 시장 업계 1위인 (주)KT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래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SK그룹은 CJ헬로비전(주) 인수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5. 12. 1.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주)가 (주)CJ오쇼핑으로부터 CJ헬로비전(주) 주식 30% 인수 및 SK텔레콤(주)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주)와 CJ헬로비전(주)의 합병(존속회사 CJ헬로비전(주))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주)의 이동통신 경쟁업체인 (주)KT, (주)LGU+ 뿐만 아니라 (주)SBS, 지역 케이블 방송업체 등도 위 인수·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주)의 무선통신 지배력이 방송까지 확대되어 불공정 행위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수·합병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반대가 이어지자, SK그룹은 CJ헬로비전(주) 인수·합병 심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승인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3)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기석방 추진

최태원은 2012.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4. 2.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잔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출소하였다.

한편, 최태원의 동생이자 SK그룹 수석부회장인 최재원은 2011. 12. 28. 최태원과 공범관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그 판결이 2014. 2.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2016. 2. 경에는 형집행률이 80%를 넘어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이에 SK그룹은 최재원의 조기석방을 목표로 2015. 8. 경부터 별도 TF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하고 최태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오는 등 피고인 박근혜의 최재원 조기석방 관련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박근혜의 최태원과의 비공개 단독면담

피고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재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와 '비텍스포츠¹²⁾'의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2016. 2. 초순경 케이스포츠 재단 과장 박현영에게 지시하여 「가이드러너¹³⁾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각 종목별 연간 해외 훈련 계획 및 예산표」 등의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박근혜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는 2016. 1. 30. 경 안종범에게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12) 피고인 최서원은 2015. 8. 25. 독일 소재 폐이퍼컴퍼니인 '마인체 959'를 인수하여 '코어스포츠(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로, 2016. 2. 9. 다시 '비텍스포츠(Widec Sports GmbH)'로 회사명을 변경등기함

13)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경기 시 장애인 선수의 곁에서 함께 경기하며 완주를 돋는 가이드 선수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위 지시에 따라 단독면담을 준비하면서 SK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비공개 단독면담에 참고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준비하였다.

'SK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 SK종합화학의 외국인 합작공장 설립 등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SK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 관련하여, 「i) (건의내용)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신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시특허 부여 건의 ⇒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토록 하겠음. ii) (건의내용)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건의 ⇒ 정부는 이번 M&A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련하여, 「SK그룹은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각각 68억 원, 43억 원을 출연 (총 111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초순 ~ 중순경 안종범으로부터 위 말씀 자료를 보고받아 최태원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6. 17:0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위 말씀자료를 토대로 최태원과 약 40분 동안 비공개 단독면담을 하였고, 면담 도중에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안종범도 배석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SK그룹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액수를 물어 안종범의 답변을 들은 후, 최태원에게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최태원은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SK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CJ헬로비전 M&A 심사)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금품 요구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6.자 최태원과의 비공개 단독면담 이후 안종범에게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의 명함, 더 블루케이 회사소개서,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를 건네주면서 최태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2016. 2. 23.경 청와대 경제수석실 대관업무를 담당해오던 SK텔레콤 부사장 이형희에게 전화하여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이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청와대로 찾아온 이형희에게 행정관 김건훈을 통해 위 자료들을 전달하였다.

이형희는 2016. 2. 24.경 SK그룹 부회장이자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태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고, 김영태는 이를 대관업무 담당인 CR팀장(전무) 박영춘에게 건네주면서 정현식에게 연락하여 자금 지원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박영춘은 2016. 2. 24. 위 정현식, 박현영에게 연락하여 2016. 2. 29. 자금 지원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최서원은 2016. 2.경 정현식과 박현영에게 “SK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SK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정현식과 박현영은 피고인 최서원의 지시에 따라 비넥스포츠 한국지사장 직함을 내세운 장순호와 함께 2016. 2. 29. 서울 종로구 종로 26에 있는 서린빌딩 31층 SK그룹 CR팀 회의실에서 박영춘 및 CR팀 부장 오세진을 만나, '(1) 가이드러너 연구용역비 4억 원을 더블루케이에 지원, (2)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비 35억 원을 케이스포츠에 지원, (3)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전지훈련비 50억 원을 독일 비넥스포츠에 지원 등 합계 89억 원을 지원하되, 그중 50억 원은 독일 비넥스포츠로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현식, 박현영, 박영춘, 오세진은 2016. 3. 30. 같은 장소에서 2차 협의를 하였고, 그 무렵 SK그룹 측은 정현식, 박현영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 1년에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은 박현영으로부터 자금지원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2016년 20억 원, 2017년 10억 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여 SK그룹 측과 케이스포츠 재단 측은 2016. 4. 하순까지 30억 원의 지급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SK그룹 회장 최태원, 부회장 김영태, 전무 박영춘 등으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에 4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35억 원 및 비넥스포츠에 50억 원 합계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였다.

특검인지 범죄사실

V. 삼성그룹 관련 뇌물 범행

1. 피고인 박근혜 및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

최서원은 1975년경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1976년경 '구국봉사단',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으로 각 명칭 변경, 이하 '새마음봉사단', 총재는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피고인 박근혜)의 창립자인 故 최태민의 딸로서,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1986년경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1989년경 피고인 박근혜가 이사장인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피고인 박근혜와 친분을 쌓아 왔으며, 피고인 박근혜가 1998. 4.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면서 최서원의 남편 정윤회가 비서로 활동하며 피고인 박근혜를 보좌하였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최서원이 피고인 박근혜와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2013. 1.경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을 통하여 국무회의 자료, 정부 주요 인사안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들을 건네받아 피고인 박근혜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박근혜와 하루에도 수차례씩 수시로 직접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문체부 차관, 駐 미얀마 대사 등 정부 고위직 인사 선정 및 대형 민간건설사 대표이사 임명, 민간 은행의 임직원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화, 체육 관련 이권사업, 정부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하는 등 피고인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최서원은 피고인 박근혜가 1990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 있는 주택(이하 ‘삼성동 사저’)으로 이사할 때 어머니 임선이와 함께 피고인 박근혜를 대신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1998년경부터 직원을 시켜 삼성동 사저를 관리해 주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 관저 및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 해주었으며, 1998년경부터 피고인 박근혜의 의상 제작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고, 2013년경부터 약 4년간은 피고인 박근혜의 의상 제작 비용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 의상실 직원 급여 등 약 8,000만 원을 대납해주었으며, 2013년경부터 피고인 박근혜에게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하여 비공식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박근혜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피고인 박근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1991년경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삼성전자 부회장이 되었고, 2016. 11.경부터 삼성전자 이사로 등재된 바,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0.60%만을 보유하면서, 자신이 17.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를 통해 순환출자의 방식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고(2017. 1. 기준),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삼성그룹의 소위 ‘대관 업무’ 창구 역할을 하면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간의 사업 및 투자업무를 조정하는 미래전략실(2012. 12.경 ‘구조조정본부’에서 명칭 변경)

등을 통해 각 계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재용은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최지성, 실차장(사장) 장충기,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무 황성수와 공모하여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피고인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등으로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가. 뇌물수수 시점을 전후로 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

(1) 뇌물수수 시점을 전후로 한 이재용의 현안

(가) 개요 : 이재용의 '승계작업' 추진

이재용은 1996.경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경 삼성 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중여받은 비교적 소액의 자금으로 이건희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도움¹⁴⁾을 받아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이재용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활용 등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14)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은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학수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건희 회장은 2009. 12. 29.에 이학수 부회장은 2010. 8. 15.에 각각 특별사면 되었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4. 5.경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순환출자를 활용한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이재용은 다른 주요 정치세력들과 비교하여親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에는 승계작업을 성공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 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위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한편,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 세대의 반도체와 휴대전화 사업의 뒤를 이을 삼성그룹의 신수종(新樹種) 사업으로 '바이오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2015. 5.경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삼성그룹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왔다.

(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융회

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집단에게 소위 '맞춤형'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직면하여 왔다. 이재용은 위 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승계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4. 7. 16.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2012. 9. 26.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발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인 면담 시 삼성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개진하게 하는 등 정부 측을 상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을 통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피고인 박근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입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을 2013. 5. 경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2014. 2. 경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각각 포함시켜 추진해 왔고, 2016. 1. 경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 업무보고 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게 하였고, 그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그룹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재용은 2014. 5. ~ 6. 경 위 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법적 · 사회적 논란 끝에 상당수의 지분을 취득한 삼성SDS와 제일모직(2014. 7. 4. '삼성에버랜드'에서 상호 변경)에 대하여 유가증권 시장 상장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거쳐 삼성SDS는 2014. 11. 14., 제일모직은 2014. 12. 18. 각각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소액주주들로부터

이재용이 주주들과 시장에 손해를 끼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비상장 지분을 활용하여 막대한 상장 차익까지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5.

2. 경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소급하여 국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이재용 등으로부터 1조 원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이학수 법(法)’이 발의된 바 있다.

(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무산

이재용은 2014. 9. 1.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을 발표한 후 2014. 10. 27.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었으나, 위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위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흥완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시가가 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마찬 가지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위 합병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합계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2014. 11. 19. 위 합병이 무산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때문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한 계열사 간 합병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이재용은 승계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마) 삼성테크원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한화그룹 매각

이재용은 위 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2014. 11. 26. 삼성그룹의 비핵심 계열사인 방위사업체(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와 석유화학사업체(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4개 회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 5.경 위 4개 회사의 매각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을 혈값에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매각 대상 계열사 노조의 반발과 언론의 문제제기 등 비판 여론이 있었고, 삼성 토탈과 한화케미칼의 합병을 통한 일부 화학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 42.1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의 주식은 1.41%만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식 4.06%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주식 19.34%를 보유하고 있었는바(2015. 5. 기준),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통해 합병 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재용은 위 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제일모직 지분을 다수 보유한 이재용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발표하였는데, 2015. 5. 27. 삼성물산의 주주인 외국계 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은 위 합병의

합병 비율['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였고, 2015. 6. 24. 위 합병과 유사한 사안인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반 의결권 행사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 차장 장충기는 2015. 7. 초순경 미래전략실 임직원 등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의 동향을 파악하고, 삼성물산 주주 등을 접촉하여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수형은 2015. 7. 4.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합병 찬반 동향을 파악하여 장충기에게 수시로 보고하였고, 2015. 7. 초순경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 삼성물산 대표이사 김신은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부회장 윤석근을 5회 만나 "합병에 찬성해 주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미래전략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게 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박근혜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돋기 위하여 2015. 6. 말경, 정치권이나 행정부처가 개입하여 '국민들의 노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독립성에 반하는 방식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안종범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 7. 6.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로부터 적정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 이므로 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도 적정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이라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으며,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도 위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받았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 합병 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으로 계산¹⁵⁾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 제시한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¹⁶⁾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찬반 결정을 위해서 'SK C&C 주식회사와 SK 주식회사 간 합병 안건' 처리 전례에 따라 외부위원회으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위 합병 안건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¹⁷⁾는 위와 같은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론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2015. 7. 초순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국장 조남권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전문위원회의 반발을 묵살하고 흥완선

15)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은 ① 처음에는 1(제일모직) : 0.64(삼성물산)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할인율(25%) 대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할인율(41%)을 적용하였고, ② 기업의 영업 가치를 산정할 때 삼성물산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을 적용하고, 제일모직은 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③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에 대하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산정한 가장 낙관적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1:0.46 합병비율 역시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보기 어려움

16) 이러한 분석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지분가치로 인한 이익상승분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임

17) 문형표 前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2017. 1. 16. 구속 기소되었음

본부장 등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고 소관부서에서 올린 안건이 대부분 부서 의견대로 의결되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2015. 7. 10. 홍완선 본부장은 문형표 장관의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될 손해(최소 1,388억 원)를 상쇄할 수 있는 2조 원 이상의 시너지가 합병 후 법인에 생긴다’는 내용으로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회의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7.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불법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됨에 따라 최소 8,549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위 합병에 대하여는 소액 주주,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¹⁸⁾을 통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합병등기 후 6개월 내에 위 합병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상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하여 삼성그룹 계열사가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공정 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8) 2017. 1. 31. 삼성물산 주가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매매손과 평가손을 합산한 총 손실액은 8,638억 원임

(사)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이재용은 2015. 5. 하순 ~ 7. 초순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인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신규 순환출자 고리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합병을 성사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이재용은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박상진으로 하여금 2015. 7. 10.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종범에게 “엘리엇과 같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 간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기업 협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이하 ‘원샷법’, 2015. 7. 9.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의 대량보유 시 금융위원회 등 보고의무 강화(영국, 독일과 같이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 주식 기준을 5%→3%로 강화, ‘보유 목적’ 관련 금융위원회 실무 매뉴얼 구체화 등) 및 엘리엇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건의하였고, 안종범은 박상진의 건의에 대하여 “5% 지분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 문제는 검토를 할 예정이고, 원샷법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재용은 그 외에도 장충기를 통해 전경련으로 하여금 언론 및 공청회 등에서 엘리엇 사안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을 돋기 위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 및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하게 하였고, 특히 2015. 7. 25. 피고인 박근혜와 단독 면담 시 피고인 박근혜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개입 등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7. 안종범에게 엘리엇 사태 등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 및 경영권 방어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후 2016. 2. 4. 새누리당의 주도 하에 ‘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1.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하여금 엘리엇의 대리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前 주한 미국대사 면담 시 엘리엇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2. 24. 엘리엇의 5% 보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6. 5. 경 위와 같은 5% 보고의무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문제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발표 이후 위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그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된 삼성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 중이던 삼성물산에 대해 이재용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총량이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었고,¹⁹⁾ 이에 이재용은

19) 2015. 12. 2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16. 2. 25.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중 130만 5,000주(약 2,000억 원 규모)는 이재용 자신이 매입하고, 200만 주는 이재용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매입하였음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 전인 2015. 6.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그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위 2의 가의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2015. 7. 1. 엘리엇 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되어 공정거래법상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 합병으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의 발생 여부 및 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이재용의 입장에서 승계작업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박상진은 2015. 7. 10. 위 2의 가의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안종범에게 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를 삼성 측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재용은 2015. 7. 24.부터 2015. 9. 29. 사이에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6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부서인 경쟁정책국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삼성 측의 입장 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등 3개월 이상의 검토 끝에 2015. 10.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하여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 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500만 주, 합계 1,000만 주를 2016. 3. 1.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이 순차 결재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고, 다음날인 10. 15. 장영인 삼성전자 상무 등 삼성 측

담당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0. 15.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도록 요구하여 이를 삼성 측에 문서로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11. 5. 장영인 상무 등 삼성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000만 주 처분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2015. 11. 중순까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블록딜(Block Deal) 방식으로 매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대로 이행하겠으니, 공식 통보만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2015. 11. 17. 김종중이 김학현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일식집에서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한 1,000만 주는 너무 많다. 삼성전기 부분(500만 주)은 수용하겠는데, 삼성SDI 부분(500만 주)은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탁하였고, 그 무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은 김학현에게 전화하여 “삼성 측에서 종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구하였고, 이후 김학현은 김종중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검토 상황, 일정, 검토의 주안점 등 대상 기업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김종중과 최상목 비서관의 요구에 따라 2015. 11. 18. 담당 부서인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사무관 석동수를 불러 처분주식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그 후 2015. 11. 20.과 27. 곽세봉 국장, 기업집단과장 김정기, 석동수 사무관이 11. 30. 공시가 예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공식 통보 연기는 불가능하니 즉시 삼성 측에 기존에 결정된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김학현에게

보고하자, 김학현은 “삼성전기 부분(500만 주)은 적용제외로 보아야 하고, 1,000만 주로 삼성에 공식 통보는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위원장이냐”라고 말하며 경쟁정책국장 이하 실무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설명자료를 검토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쟁정책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이와 같이 이미 최종결정권자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결재하여 삼성 측에 통보까지 끝낸 유권해석을 이해관계자인 삼성 측의 청탁과 청와대의 요구로 번복하는 전례 없는 무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향후 문제될 소지가 크므로 실무자들이 정당하게 행동한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곽세봉 국장은 11. 27. 정재찬 위원장을 찾아가 “실무자들의 의견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김정기 과장은 그 무렵 석동수 사무관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일자로 정리해 두라”고 지시하였으며, 석동수 사무관은 10. 14.부터 12. 23.까지의 위 사안 관련 결재 상황, 김학현 부위원장, 정재찬 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 최상목 비서관, 인민호 행정관 등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들, 삼성전자 장영인 상무, 미래전략실 김종중, 이왕익 전무 등 삼성 측 관계자들의 말과 행동 등을 ‘일자 정리’라는 제목으로 일자별, 주요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용은 2015. 12. 19.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에 관한 삼성 측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20. 위와 같은 김학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기준에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바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0만 주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정하여 삼성 측에

통보하여 시행하겠다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 인민호 행정관은 석동수 사무관에게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요구하였고, 2015. 12. 21. 최상목 비서관은 안종범으로부터 500만 주만 처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학현에게 전화하여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줄여줄 방안이 없느냐”고 삼성 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구하였다. 같은 날 김학현은 그러한 최상목 비서관의 요구에 따라 석동수 사무관 등을 불러 “900만 주를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2015. 12. 22. 삼성 측 요구대로 500만 주만 처분하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시 석동수 사무관에게 지시하여 당초 처분 대상 주식규모가 ‘900만 주’ 단일 결론으로 되어 있던 보고서를 변경하여 처분 대상 주식규모를 ‘1안(900만 주), 2안(500만 주)’로 하여 결론을 정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그 보고를 받은 정재찬 위원장은 1안(900만 주)으로 가면 정부(청와대)와 결코 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되고, 2안(500만 주)으로 가면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최상목 비서관은 안종범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빨리 500만 주로 결정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종범의 지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시 김학현에게 전화하여 “안종범 수석이 공정거래위원장이 2안(500만 주)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주 역정을 낸다. 상황이 좋지 않다. 형님이 2안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설득해 달라”라고 청와대의 뜻을 따르도록 압박하였다.

그에 따라 김학현은 최상목 비서관의 말을 정재찬 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2안으로 결정하라고 설득하였고, 정재찬 위원장은 2015. 12. 23. 김학현을 통해 본건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들은 후 결국 2안(삼성SDI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쳐분)으로 결재하여 삼성 측에 공식 통보하고 외부에 공개하였다.

(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이재용은 위 2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삼성생명을 투자부문(지주)과 사업부문(생명)으로 인적 분할하고 삼성생명의 자산 약 11조 원(금융계열사 지분 약 5조 9,000억 원, 삼성생명 자사주 약 2조 1,000억 원, 현금 약 3조 원)을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한 후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금융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가 개인자산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두 배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등 새로 설립될 금융지주회사 지분 약 45.78%를 보유하여 금융계열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권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마련한 후, 2016. 1. 중순경 기획재정부 출신인 미래전략실 이승재 전무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은밀하게 사전 검토 요청을 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전환계획 승인이 필요한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같이 은밀하게 사전 검토 요청을 받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환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는바, 2016. 1. 28. 언론에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자, 삼성 측과 협의를 하여 삼성 측으로부터 금융지주 전환계획을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였고, 삼성 측은 이러한 전환계획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전달하였다.

그 후 2016. 2. 14.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을 통하여 삼성 측이 제출한 전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약

5조 9,000억 원을 삼성 측 희망대로 5년 내 단계적으로 매각을 허용할 경우 유배당계약자 배당이 전혀 없어 삼성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② 삼성생명이 보유한 현금 3조 원을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여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경우 보험회사의 현금을 계열사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호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이용하여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강한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은 도저히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손병두가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을 이승재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가 청와대로 찾아가 안종범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2016. 2. 15. 이재용은 피고인 박근혜와 단독 면담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피고인 박근혜에게 직접 부탁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단독 면담 직후 안종범에게 이재용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잘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삼성 측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해 재검토하였음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여, 2016. 3. 13.에는 정은보 부위원장이 다시, 일주일 뒤인 3. 20.에는 금융위원장 임종룡이 각각 삼성 측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참하고 청와대로 찾아가 안종범에게 삼성 측의 위 전환계획을 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에서 삼성 측의 전환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삼성 측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이재용은 미래전략실 전무 이승재, 삼성생명 부사장 방영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추진 의지가 강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삼성에서는 원안대로 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3. 29. 삼성 측의 전환계획 추진 사실이 발표될 경우 큰 비판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16. 4. 13.로 예정된 총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도록 방영민에게 권고하였으며, 삼성 측은 2016. 4. 11. 금융 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성공,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이재용은 ‘바이오 사업’을 삼성그룹의 신수종(新樹種)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자신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추진해 왔으나,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적자 기업은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상 요건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15. 11. 5.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년 영업이익 3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하였고, 2015. 12. 21. 피고인 박근혜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이재용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바이오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재용은 2016. 2. 15. 피고인 박근혜와 단독 면담 시 피고인 박근혜에게

2015. 12. 경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원료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환경부의 등록을 면제해 주어 2016. 2. 경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이 상업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오사업 공장 단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바이오사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후 2016. 2. 15. 및 2. 21. 두 차례에 걸쳐 이재용의 요청을 안종범에게 전달하면서 삼성 등으로부터 규제 리스트를 받아 환경부가 검토하게 하는 등 잘 챙겨볼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2016. 3. 2. 한국거래소는 위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상장 심사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2016. 3. 3. 국가기술과학심의회 산하 ‘바이오톤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16. 5. 7.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방문하였으며, 2016. 11. 1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경된 상장 심사 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²⁰⁾ 현재 바이오톤별위원회는 바이오 사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환경부는 바이오사업에 대한 화평법 적용 제외 등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카) 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2015. 5. 경부터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삼성서울병원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삼성그룹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2015. 6. 23. 이재용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였음에도 비난 여론이 지속되자

20) 위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개정 후 적자 기업이 상장 심사에 통과한 수혜 사례는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함

이재용은 장충기를 통해 감사원 임원 출신 고문 등을 동원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된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제재를 완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시 이재용에게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였고, 2015. 7. 28.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2015. 9. 10.부터 감사에 착수하여 2016. 1. 14.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별검사 수사 개시 후인 2016. 12. 26. 비로소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2017. 2. 1.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재용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사법당국의 수사 및 재판 등을 겪은 이재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승계작업을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 정부 정책당국의 협조, 필요한 법령의 입법, 불리한 입법 저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막강한 입법관여권, 대통령의 연설,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의 행사를 통해 반영되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승계작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자 등 민간 시장 참여자들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입장, 대통령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정부기관의 입장 및 행정부 발의 입법이나 여당을 통한 관련 법률 입법 진행 경과 등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여부 등을 통하여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성공 가능성, 일정 등을 예측하고 투자결정 등에 반영하는 등,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의 성공 여부에 큰 변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재용은 승계작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 박근혜와 단독 면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미래전략실 간부 등을 통해 정책·규제 당국자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경제 관련 여론주도층에게 도움을 부탁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한 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왔으며, 피고인 박근혜도 2014. 6.경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로부터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챙겨 이재용에게 승계작업 등과 관련 현안들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최서원도 언론 보도 및 피고인 박근혜와 국정운영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박근혜가 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박근혜가 이재용의 위와 같은 계획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도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방향이 민간 분야에 영향을 끼쳐 주식시장 등

에서 이재용의 계획에 우호적인 흐름이 형성되어야 했고, 반대로 피고인 박근혜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승계작업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재용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나.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간 뇌물수수 협의 과정

(가) 2014. 9. 15.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3. 4.경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 자신의 딸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위 대회 심판들에 대해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3. 7.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문체부 담당자로 하여금 정유라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박원오를 만나 대한승마협회의 비위를 조사하고 최서원이 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박근혜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나, 문체부 담당자 노태강 등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박원오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 내용에 불만을 갖게 된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는 문체부 장관에게 노태강 등에 대한 공개적 좌천 인사를 지시하였으며, 2013. 10.경 최서원의 추천을 받은 김종을 대한승마협회를 감독하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정유라가 승마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한승마협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14. 3.경 정유라가 승마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되자 2014. 4.경 “비선 실세 최서원,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에 부당하게 선발되었다”는 소위 ‘공주 승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¹⁾ 2014. 9. 초순경 최서원은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한화그룹이 정유라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박근혜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삼성그룹으로 바꾸어 정유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그 전부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에게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에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4. 9. 15.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을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하면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 및 제일모직 상장 심사 등 승계 작업에 필요한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근혜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및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이재용과 피고인 박근혜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21) 당시 정유라가 피고인 박근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정윤희와 최서원의 딸이라는 사실은 대한승마협회 등 승마 관련자들이나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2015. 7. 25.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 간 비공개 단독 면담²²⁾

피고인 박근혜가 위와 같이 2014. 9. 15. 이재용에게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을 요구한 후 삼성그룹 측에서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위하여 2014. 11.경 이영국 삼성전자 상무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내정하는 등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경부터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특히 김종에게는 정호성을 통해 삼성 측에 연락을 하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최서원은 정유라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가출 등으로 인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5. 5. 8. 정유라가 출산을 하자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10. 박원오로 하여금 정유라 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말 구입 등의 비용으로 약 235억 6,4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박상진에게 보고하게 한 후, 2015. 6. 30. 정유라를 독일로 출국시켰다.

최서원은 위와 같은 준비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실제 지원이 늦어지자, 2015. 7.경 삼성그룹 소속 대한승마협회 임원 이영국, 권오택이 정유라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이영국, 권오택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의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고가의 말 구입 및 독일 전지훈련 비용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지원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하여 앞서

22) 2015. 7. 25.에는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소위 ‘안가’에서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의 임기 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 보다도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하고 있다. 삼성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이영국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 권오택은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말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현안을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위 2의 가의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사례를 하고, 이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

작업에 필요한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근혜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이재용과 피고인 박근혜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2016. 2. 15.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 간 비공개 단독 면담²³⁾

최서원은 2016. 1. 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말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와 같은 요청을 수락한 피고인 박근혜는 2016. 1. 12.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이재용 및 박상진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정유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서원은 2016. 2. 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이재용이 그동안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해주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박근혜는 이재용이 승계작업을 위해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 2015. 12. 경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간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계열사 간 주식 처분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처분하여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최소화하는 등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하여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도와준 점 등을 이용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이재용

23) 2016. 2. 15.에는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등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관련 뇌물수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음

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오후 소위 ‘안가’에서 이재용을 단독 면담하면서,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위 2의 가의 (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전 결정을 번복하고 이재용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해 준 점에 대해 사례를 하고, 이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엘리엇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삼성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바이오 신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이재용과 피고인 박근혜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과정

(가) 2014. 9. ~ 2015. 7.경 뇌물수수 과정

이재용은 2014. 9. 15. 위와 같은 피고인 박근혜와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최지성, 장충기에게 지시하여 2014. 11.경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이영국 삼성 전자 상무를 내정하고, 2014. 12.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박상진을 내정하였으며, 그 무렵 장충기는 ‘승마인의 밤’ 행사에 정유라가 참석하지 않게 하여 소위 ‘비선 실세’ 논란에 따른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정유라를 특별히 관리하였다.²⁴⁾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경부터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특히 김종에게는 정호성을 통해 삼성 측에 연락을 하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최서원은 정유라가 2015. 5. 8. 아들을 출산한 후 본격적으로 승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박원오, 김종찬에게 지시하여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해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선수에게 ‘삼성그룹의 부담으로’ 말 구입비용 등 합계 약 235억 6,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한국승마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2015. 6. 10. 박상진에게 보고하게 하였고, 2015. 6. 22. 박원오를 독일로 가게 하여 정유라의 승마훈련 및 정착 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박상진은 2015. 7. 23.경 김종을 만나 ‘정유라가 최근 출산을 하여 삼성에서 승마훈련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유라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바로 삼성에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달하여 이재용이 위 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뇌물수수 합의를

24) 2014. 11. 말 ‘최서원의 남편 정윤회와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국정 중요 사안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검찰 수사까지 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최서원이 1위, 정윤회가 2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는 등, 최서원이 소위 비선실세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었음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 2015. 7. ~ 2016. 10.경 뇌물수수 과정

최서원은 2015. 7.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위 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삼성 그룹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중순경 안종범을 통하여 이재용에게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안종범은 2015. 7. 21.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일자를 2015. 7. 25.로 확정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와의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받은 이재용은 피고인 박근혜가 단독 면담 시 정유라에 대한 지원 상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하고 2015. 7. 23. 이재용 본인 주재로 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박상진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그때까지 정유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 박근혜와의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²⁵⁾

이재용은 2015. 7. 25. 위와 같은 피고인 박근혜와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재용으로부터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박상진은 다음 날인 2015. 7. 26. 이영국에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하고 마장시설, ‘정유연’이 훈련도 보고 관련 ‘컨설팅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박원오에게 연락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²⁶⁾ 2015. 7. 27. 이재용, 최지성, 박상진은

25) 박상진은 2015. 7. 23. 이재용과 회의를 한 직후에 김종찬을 통해 박원오의 독일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다음 날인 7. 24. 이영국에게 박원오와 통화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영국은 박원오에게 전화하여 박상진이 독일에 직접 가겠다고 말하였음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정현호와 함께 회의를 하여 피고인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이재용에게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인 이영국, 권오택을 김재열의 직계 임직원인 황성수, 김문수로 각각 교체하였다.

최서원은 2015. 7. 25. 박원오에게 “박상진이 정유라 승마 관련 지원을 위하여 연락을 할 것이니 만나 보라”는 지시를 하고,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박원오는 2015. 7. 29. 독일로 찾아온 박상진을 만나고, 2015. 8. 초순경에는 독일로 찾아온 황성수를 만나 최서원이 독일에 준비할 컨설팅회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였으며, 2015. 8. 25. 100% 자기 자금으로 인수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마인제959’를 코어스포츠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등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5. 8. 26. 박원오, 코어스포츠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던 박승관, 박상진, 황성수가 만나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015. 8.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운영비 (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에 따라 최서원이 이재용으로부터 받기로 한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을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최서원은 이재용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5. 9. 14. 10억 8,687만 원(81만 520 유로), 2015. 12. 1. 8억 7,935만 원(71만 6,049 유로)을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만 6,887 유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대금 7억 4,915만 원(58만 유로),²⁷⁾ 2015. 11. 13. 경 위

26) 당시는 위 ‘컨설팅회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었음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 유로), 2015. 12. 14. 말 수송차 구입 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을 마주 등에게 송금하게 하여 말, 차량, 말 구입 관련 부대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최서원은 2015. 11.경 박원오와 사이가 나빠져 박원오가 귀국해 버리자 박상진에게 직접 만나서 지원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구하여 2015. 12. 31.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박상진과 황성수를 만나 지원 문제를 협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독일 현지, 위 그랜드하얏트 호텔 등에서 한 달에 1회 가량 박상진 등을 은밀하게 만나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최서원은 2016. 1. 초순경에는 피고인 박근혜에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말을 이재용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박근혜는 2016. 1. 12.경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안종범을 통하여 이재용에게 전달했고, 이재용은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2016. 2. 4. 박상진, 황성수 등으로 하여금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V : 150만 유로, 라우싱1233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을 마주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 말을 최서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최서원은 2016. 1. 하순 ~ 2. 초순경 위 2의 나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에게 정유라에 대한 삼성그룹의 계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정유라의 승마 관련

27) 당초 위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말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표시되었는데, 2015. 11.경 이를 알게 된 최서원이 박원오에게 “이 재룡”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 준다고 했냐, 왜 말 여권에 소유주를 삼성이라고 적었냐?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박상진을 직접 질책하기 위해 독일로 소환하자 박상진은 박원오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서원에게 급히 사과하였고, 위 살시도의 패스포트 상 소유주를 중개인인 안드레아스로 다시 바꾸고, 그 후 구입한 말들은 패스포트 상 소유주를 ‘삼성’으로 하지 않고 매도인 측 소유로 남겨두었음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재용은 박상진 등으로 하여금 2016. 3. 24. 9억 4,340만 원(72만 3,400 유로), 2016. 7. 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최서원이 지정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송금²⁸⁾하게 하였고, 2016. 2. 19. 위 비타나V와 라우싱1233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 유로)을 납부하게 하여 위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한편, 최서원은 2016. 5.경 피고인 박근혜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때 박상진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박근혜에게 박상진에 대하여 특별히 정유라 승마 관련 지원에 대하여 고맙다는 뜻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박근혜는 2016. 5. 하순경 에티오피아 국빈 방문 시 만찬장에서 박상진을 피고인 박근혜와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게 하는 전례 없이 과격적인 예우를 하고, 박상진에게 직접 악수를 청하면서 “승마 등 지원을 해 주어 감사하다.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싶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최서원은 그 무렵 박상진에게 “악수는 잘 하셨냐?”라고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²⁹⁾의 대가로 이재용과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이재용으로부터 합계 36억 3,484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추가로 합계 41억 6,251만 원을 말 구입 및 부

28) SK그룹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2016. 2. 29. 펜싱 등 케이스포츠 계단의 해외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89억 원을 위 비텍스포츠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독일에 있는 비텍스포츠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세법 등 여러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

29)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관련 금품 수수 범행은 형법 제129조에 따른 뇌물수수 범행임. 다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더하여 공여자인 이재용의 혐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 존재함

대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간 뇌물수수 합의 과정

(가) 2015. 7. 25.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5. 2. 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김종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영재센터를 설립하였다.

최서원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정호성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피고인 박근혜에게 영재센터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시호와 함께 만든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위 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이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소위 ‘안가’에서 위 2의 나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에게 피고인 박근혜의 임기 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근혜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피고인 박근혜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2016. 2. 15.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6. 2. 14.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피고인 박근혜에게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시호를 시켜 급히 만든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위 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이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위 2의 나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에게 최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근혜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피고인 박근혜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과정

최서원은 2015. 7.경 위 2의 다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재용은 같은 날 최지성, 장충기, 김재열 등에게 그와 같은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다.

최서원은 2015. 8.경 장시호에게 김종으로부터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에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였는데 장시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위에다 한 번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박근혜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재차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5. 8. 9. 안종범에게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에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김재열은 2015. 8. 20. 김종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 2015. 8. 21. 최서원, 장시호의 순차 지시를 받은 영재센터 전무이사 이규혁을 만나 구체적인 영재센터 지원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영국은 2015. 9. 23. ~ 24.경 영재센터 직원들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장충기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2015. 10. 2. 삼성전자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최서원은 2016. 2. 경 위 2의 다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이에 2016. 2. 1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에서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재용은 같은 날 최지성, 장충기에게 위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장충기로부터 이재용의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 지시를 전달받은 이영국은 최서원, 장시호의 순차 지시를 받은 이규혁을 만나 영재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요청을 확인하였고, 김종을 만나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김재열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삼성전자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하여, 위 Ⅱ의 6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이재용으로부터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위와 같은 금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라.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간 뇌물수수 협의 과정

(가) 2015. 7. 25.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 간 비공개 단독 면담

최서원은 2015. 5.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출연기업들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위 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이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그룹에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구를 승낙한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 최상목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2015. 7. 하순경 ‘문화와 체육 분야의 두 개 재단법인의 초기출연금 규모는 각각 300억 원 수준으로 출범하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진, 한화, 두산, CJ 등 대통령이 지정한 10개 그룹에서 하나의 재단법인에 30억 원씩 출연하여 설립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단 그룹 간 출연규모 차등여부 등은 추후 검토하며, 재단 설립 후 사업재원은 ① 출연금 이자수익, ② 정부 재정지원, ③ 대기업(법인) 및 기업 임원(개인)의 기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구를 하기 위하여 이재용을 포함한 7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안종범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소위 ‘안가’에서 위 2의 나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에게 피고인 박근혜의 임기 내에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의 승계 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

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고 말하여 향후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 박근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피고인 박근혜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2016. 2. 15. 피고인 박근혜와 이재용 간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4. ~ 7. 25. 이재용을 포함한 7개 그룹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난 후 안종범에게 위와 같이 10개 그룹에서 출연하여 두 개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었으니 전경련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2015. 7. 하순 ~ 8. 초순경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 이후 재단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 최서원은 2015. 10. 경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평계 삼아 정호성을 통해 피고인 박근혜에게 “중국과의 문화재단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이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재단 설립 절차 진행을 재촉하였으며, 안종범은 피고인 박근혜의 위와 같은 지시를 이승철에게 전달하면서 최상목 비서관을 통하여 삼성그룹을 포함한 9개 그룹을 재단 출연 기업으로 특정하여 알려주었다. 그 무렵 최서원은 문화 관련 재단법인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고 위 재단 이사장 ‘김형수’, 사무총장 ‘이성한’, 이사 ‘이한선’ 등

재단법인 임직원을 내정하여 피고인 박근혜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 및 이사진 명단을 알려주었고, 2015. 10. 23. 안종범은 최상목 비서관을 통해 이를 전경련 측에 전달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그대로 반영하게 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위 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이 피고인 박근혜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위 2의 나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재용에게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에 협조해 주어 고맙다.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포함하여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이러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박근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이재용과 피고인 박근혜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재단설립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과정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은 위 2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이재용과 단독 면담에서 재단 설립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고, 이재용은

2015. 7. 25. 피고인 박근혜와의 단독 면담 후에 최지성, 장충기에게 피고인 박근혜가 요구하는 대로 문화, 체육 관련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5. 이재용과의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전경련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 이승철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였으며, 이승철은 2015. 8. 중순 경 박찬호 전무를 통하여 최지성, 장충기에게 “안종범 수석이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하니 전경련에서 두 재단에 각각 300억 원씩 모금을 해 달라고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말했던 사안이다”라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박근혜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던 전경련의 박찬호 등은 2015. 10. 23. 재단 명칭이나 이사진 구성, 재단 설립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2015. 10. 27.까지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삼성그룹에서 105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해 달라”는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를 최지성, 장충기에게 전달하였고, 2015. 10. 24. 안종범으로부터 갑자기 재단의 출연금 총액을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로부터 재단 규모를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에 따라 삼성 그룹의 출연금도 125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을 최지성, 장충기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2015. 10. 26. 피고인 박근혜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기존 9:1에서 2:8로 갑자기 변경되었다.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등은 피고인 박근혜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재단 임원진들은 발기인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혀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 등 삼성

그룹이 재단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전혀 갖지 못하였고 향후 운영 과정에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음에도, 2015. 10. 25. 박찬호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계열사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2015. 11. 20. 삼성전자로 하여금 60억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로 하여금 25억 원,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15억 원, 2015. 11. 25.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25억 원 등 임의로 선정한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미르 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

최서원은 2015. 12.경 위 2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근혜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2. 중순경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지시하고, 안종범은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에 재단 설립을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 등은 최지성, 장충기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총 300억 원 중 79억 원을 삼성그룹에서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5. 12. 2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명칭, 이사진 명단을 통보받아 재단설립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2016. 1.경 미르 재단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재단 임원진들은 발기인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삼성그룹이 재단법인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전혀 갖지 못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2016. 2.경 박찬호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계열사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2016. 2. 26.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30억 원, 제일기획

으로 하여금 10억 원, 에스원으로 하여금 10억 원, 삼성화재로 하여금 29억 원 등 임의로 선정한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박근혜와 최서원의 재단 공동 운영

(가) 미르 재단의 경우

최서원은 2015. 10. 27. 미르 재단이 설립된 후 자신이 구성한 이사진을 통하여 재단을 장악하고 ‘회장님’으로 통하면서 미르 재단의 운영 방향, 사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고, 최서원이 결정한 사항들을 이한선 상임이사 등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2015. 11.경부터 ‘에꼴 페랑디-미르’ 사업³⁰⁾, 2016. 2. ~ 3.경부터 ‘K-Meal 사업’,³¹⁾ 2016. 5. ~ 6.경부터 ‘K-Tower 사업’³²⁾ 등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박근혜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박근혜의 해외순방에 미르 재단 관계자가 동행하여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을 진행하게 하거나 안종범의 도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하게 하였다. 또한 재단 직원 채용 역시 최서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16. 6.경에는 이성한 사무총장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근혜와 안종범을 통하여 김형수 이사장에게 압력을 가하여³³⁾ 이성한 사무총장을 해임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6. 1. 초순경 안종범에게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개발

30)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학교인 프랑스의 에꼴 페랑디와 제휴해서 한국 내에 한식과 프랑스요리가 접목된 요리학교(페랑디-미르)를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

31)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이학여대 식품영양학과에 영양식 개발을 의뢰하여, 이학여대에서 개발한 영양식을 아프리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후원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

32) 이란에 한류를 전파하기 위한 건물 등을 마련하는 사업

33) 안종범은 김형수 이사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성한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함

도상국을 지원하는 K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라고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미르 재단이 참여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안종범은 2016. 1. 17. 아프리카 순방 등 K프로젝트 회의를 개최하면서 미르 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 김성현 사무부총장 등을 참여하게 하였고, 이후 K프로젝트 TF를 구성하여 2016. 4. 25. 제1차 TF 회의를 포함한 TF 회의에 미르 재단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하는 등 미르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다.

(나) 케이스포츠 재단의 경우

최서원은 2016. 1. 13.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후 자신이 구성한 이사진을 통하여 재단을 장악하고 ‘회장님’으로 통하면서 임직원의 연봉, 박현영 등 재단 직원 채용 문제, 태권도 시범단 창단 및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2016. 1.경 고영태와 박현영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진행할 사업 계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2016. 1. 하순경 ‘한국형 선진 스포츠 클럽 문화 정착을 위한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2016. 1. 말 또는 2. 초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 2016. 2.경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계획안’,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 등을 보고 받았으며, 피고인 박근혜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기업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제의에 따라, 2016. 1. 30.경 안종범에게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여 2016. 2. ~ 3.경 9개 그룹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하는 과정³⁴⁾에서 SK그

34) 피고인 박근혜는 2016. 2. 15. 삼성, 현대차, LG, 2. 16. GS, SK, 2. 17. 한화, 2. 18. KT, 2. 22. 포스코, 3. 14. 롯데 그룹 회장과 각 단독 면담하였음

롭 최태원 회장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해외전지훈련 명목으로 89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였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건립할 체육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등 케이스포츠 재단에 운영과 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하여, 위 I 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합계 204억 원을 출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이재용으로부터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위 재단들에 위와 같은 금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마. 결론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합계 36억 3,484만 원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41억 6,251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77억 9,73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 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 및 위 재단들에 위와 같은 금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VII.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김기춘(2017. 2. 7. 구속 기소)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실장(이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조윤선(2017. 2. 7. 구속 기소)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으로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김상률(2017. 2. 7. 불구속 기소)은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김소영(2017. 2. 7. 불구속 기소)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교문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김종덕(2017. 1. 30. 구속 기소)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신동철(2017. 1. 30. 구속 기소)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이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정관주(2017. 1. 30. 구속 기소)는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2013. 4.경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준우승에 그치자, 최서원 등은 대회 심판원들의 편파판정 의혹 등을 제기하였고, 곧이어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문체부의 '체육단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최서원은 2013. 7.경 정호성에게 전화를 걸어 '승마 쪽에 문제가 많은데, 관련해서 박원오라는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안다, 박원오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마협회나 승마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테니 들어보면 좋겠다'라면서 박원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정호성은 그 무렵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연락하여 '박원오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마협회 쪽에 무엇이 문제인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였다.

이에 모철민 교문수석은 2013. 7.경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노태강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박원오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노태강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는 박원오를 만나 정유라가 준우승에 그친 승마대회 관련사항 등 대한승마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곧이어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를 진행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은 '대한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최서원(박원오 측)과 그 반대 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하였는데, 최서원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전해들은 박원오는 그 직후 진재수 과장에게 연락

하여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다’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2013. 8. 21.경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유진룡과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홍경식은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연락하여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했는데,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정호성도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연락하여 ‘인사조치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 인사가 되었느냐’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모철민 교문수석은 2013. 8. 25.경 외국에 출장 중인 유진룡 장관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이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채근하여, 결국 그 무렵 유진룡 장관은 이들에게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였고, 약 1개월 후 노태강 국장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진재수 과장을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시켰다.

2016. 3. ~ 4.경 진재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노태강이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박근혜는, 당시 교문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김상률에게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 있었느냐, 노태강의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김상률 교문수석은 그 뜻을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2016. 4.경 김종덕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프랑스장식 미술전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핑계삼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으로 재직 중이던 노태강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노태강은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본인의 신변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31.경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김상률,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및 관련 인사조치

가. 문화·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국가·대통령 등의 책무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지칭하는 것으로(문화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문화기본법 제2조)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그 소속 공무원, 문화·예술·영상·출판 등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7조, 제66조, 제69조)

나. 문체부 산하 기관의 설립목적과 기금 운용 등 독립성 보장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 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별도 운용·관리하며, 소속 위원들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영화기금의 관리·운용,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지역영상문화 등의 진흥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등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판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제16조의4, 제21조)

따라서, 문예·영화·출판 등 국가 문화사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의 소속원 및 심의위원들은 각종 사업의 수행여부 결정, 수행자 선정, 국고로 조달되는 기금 등의 지원여부 결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 선정 등에 있어 그 심의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휘·감독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지시나 간섭·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소위 문제단체 조치 및 관리방안 수립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천명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분야 경험이 풍부한 유진룡 장관을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문화융성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최서원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하였고, 현 정권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 되고, 인사에 있어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으며, 특히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헐난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도 ‘CJ그룹에서 하는 영화 및 방송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뜻을 CJ그룹 관계자에게 피력하였다.

그러던 중, 2013. 8.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은, 2013. 8. 21.경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실수비’)에서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 9. 9.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 된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2013.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 12. 18.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이다, 한편에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변호인'과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무렵 직접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 가치'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모철민 교문수석을 통해 문체부 담당 실국장들에게도 그 뜻을 실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모철민 교문수석은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한 문체부의 제작지원 등 투자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3년 하반기, 홍성담 작가의 결개그림이나 연극 '개구리'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 또는 희화화한 작품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예술위의 정부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점 지적' 정보보고서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

이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위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혼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정부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2013. 12. 20. 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 3. 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중간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 4. 경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3. 14. 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발언하였고, 2014. 4. 초순경 박준우 정무수석을 직접 불러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는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문체부 등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등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2014. 4. 4. 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 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로 야당 후보자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으로 선별한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소위 ‘문제예산’으로 명명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문체부 등 주요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그중 총 130건(예산 합계 139억 원)의 문제예산을 선별한 후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축소 내지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3,000여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여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 지지, 舊민노당 지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하며 감시하는 한편,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문체부 등 주요부처 및 산하 기관의 심사 위원을 파악하여 그중 좌편향인사로 선별한 오성윤 감독(문체부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심사위원, 노무현 지지선언과 문재인 후보 광고촬영을 이유로 배제) 등 26명에 대하여 공모사업 등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하였다.

그밖에도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재 대구대 교수(문체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이유로 배제) 등 좌편향인사로 선별된 70명을 향후 임기만료시 해촉하도록 조치하였고, 친노(親盧)계열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의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파단체 지원차단, 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TF 활동결과를 종합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총 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총 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 상황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보고하였고,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거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박준우 정무수석은 2014. 6. 중순경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인 조윤선을 만나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현안을 설명하면서 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무렵 신동철 소통비서관도 부임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보조금 문제와 우파지원 문제가 소통비서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다,

좌파단체는 자생력이 강한데 비하여, 우파단체는 정부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지를 못한다. 사업공모를 하면 거의 좌파가 선정되는 상황이다, 좌파들에게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문제라는 상부 지적이 있어 문재인·박원순 지지, 민노당 지지 등에 참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를 추진 중이고, 공모사업 심의위원이나 정부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하여 좌파인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조윤선 정무수석은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과 함께 피고인 박근혜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지시에 따른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등에 그 명단을 하달하였고, 2014. 10. 경 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된 정관주도 교문수석실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등 조치사항을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2014. 4. 경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모 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현황을 건네받은 다음, 그 가운데 고은(시인, 문재인 지지), 그린피그(연출가 윤한솔, 연극인 100인 문재인 지지)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전력이 있거나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좌파성향으로 분류한 개인·단체 등 약 80명을 선별하여, 그 명단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신동철 소통비서관으로부터 이 명단을 건네받은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이를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2014. 5. 초순경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조현재 차관은 이를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유진룡 장관은 2014. 1.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처음에 대통령께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지시가 수시로 전달되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요구할거라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언을 한 바 있으나, 오히려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세월호 유족 편에서 정부를 비난했던 예술계와 학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지시까지 전달받고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 하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연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원배제 명단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다만,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와 같은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문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작성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삼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 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 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상호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강요

이처럼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 하달된 초기에는 대체로 소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14. 7.경 유진룡 장관이 면직되고 조현재 차관이 경질되는 한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이 유진룡 장관과 조현재 차관에 동조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의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성분불량자’로 분류되어 조만간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소극적 대응기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이들 실장 3명에 대하여 충성심 부족, 성분불량 등을 빌미로 사직을 강요하고자 마음먹었다.

마침 최서원 등의 추천으로 2014. 8. 21.경 김종덕이 후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2014. 9.경 피고인 박근혜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지시를

받은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은 김종덕 장관에게 연락하여 '최규학, 김용삼, 신용언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김종덕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희범 차관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최규학, 김용삼, 신용언 등 실장 3명을 불러 '상부 지시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용삼 종무실장과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해당 직위로 인사명령을 받은 지 불과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 급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당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실장 3명이 사직하는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고, 문체부 관례에 따르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관이나 차관 교체 직후에는 실장급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요구받은 최규학, 김용삼, 신용언 등 실장 3명은,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떨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우려한 끝에 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경 모두 사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김기춘, 김종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최규학, 김용삼, 신용언으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1)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2. 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원인은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임명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하면서, 같은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2014. 2. 18. 경 인터넷 매체 미래한국에 ‘반미(反美), 반(反)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이 격노한다는 사실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모철민 교문수석은 그 무렵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위 문건 등을 전달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조현재 차관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유진룡 장관은 2014. 2. 21. 경 김기춘 비서실장의 집무실로 찾아 가, 우수 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논란이 된 도서의 심사·선정 경위 및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관계자 징계 검토,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등 조치 계획, 문예기금 지원대상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의 심사·선정 경위 및 예술위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선전기준 강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건네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대면보고를 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러한 유진룡 장관의 보고에 대하여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한 기조에 따라 조현래 예술정책과장과 오진숙 사무관은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경위와 심의기준 등과 함께 2014. 3.경으로 예정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첨부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모철민 교문수석은 그 무렵 문체부에서 작성한 ‘문예기금 지원 사업 관련’ 보고서와 그 내용을 피고인 박근혜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고, 보고서에 첨부된 예술위 책임심사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책임심의 위원은 예술위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그 무렵 교문수석실로부터 건네받은 105명의 후보자 가운데 문학 분야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황현산, 방민호, 신덕룡, 김사인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책임 심의위원 후보자 총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 학교강좌 등의 사유를 들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문체비서관실

옹호성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진숙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는 책임 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오진숙 사무관 등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에게 청와대에서 하달된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성과에 대하여 문체부의 평가를 받는 등 문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은,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내지 위원회의 책임 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윗선의 뜻이니 하달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2) 소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수립

2014. 10.경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질책을 받은 김종덕 장관은, 문체부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송수근 실장은 그 무렵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등 소속 국장·과장들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송수근 실장은 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견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김종덕 장관은 2014. 10. 21.경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고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서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종덕 장관은 위와 같은 보고내용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송수근 실장에게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송수근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전전 콘텐츠 활성화 TF'는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고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과 교문수석실을 통해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 11.경 정관주 소통비서관 등에게 '좌파생태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하라'고 지시하였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은 전임자인 신동철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대상자 선별 업무 등을 인계받아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선별된 대상자 명단을 계속 하달하였다.

(3)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4. 10.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천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천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김태훈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예술위 이한신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심사 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흥성담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태훈, 예술정책과장 이정우 등에게 예술위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오진숙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로부터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약 250명의 명단을 건네받아 문체비서관실 소속 김낙중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김소영 문체비서관과 김낙중 선임행정관 등은 이를 정무수석실에 전달하며 문예기금이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정무수석실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행정관 회의 등을 통하여 정관주 소통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및 소속 행정관 등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교문수석실 등의 방침을 공유하며 정무수석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웹 검색 결과 등을 토대로 김병곤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 지지, 시국선언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김낙중 선임행정관은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오진숙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오진숙 사무관은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이한신 예술진흥본부장 등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술위 위원들과 책임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하면 윗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예술위에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차례 추가 하달되었고, 그밖에 오진숙 사무관은 2015. 5.경 김낙중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장관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으며, 2015. 7. 6.경 정무수석실에서도 총 113명의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을 통해 이를 문체부에 별도 하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 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 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김종덕 장관이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상률 교문수석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를 수용한 끝에,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18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사업, 해외 레지던스 참가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학교·농어촌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사업, 서울국제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 사업, 공연티켓 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연극창작산실 시범 공연 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사업, 기간문화단체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사업,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주목할만한 작가상 선정, 예술위 심의위원회 풀 선정 등 문화예술사업 전분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연간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등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4) 영화 관련 지원배제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은, 2014. 3.경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천안함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천안함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신종필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순일 사무관에게 ‘동성아트홀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동성아트홀 등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차년도 지원심의가 진행중이던 2014. 4. 23.경, 이순일 사무관으로부터 ‘동성아트홀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신종필 행정관은, 이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즉시 문체부 조현재 1차관에게 ‘동성아트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이순일 사무관은 영진위 문봉환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영진위는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하게 되었으나, 유독 동성아트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동성아트홀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4. 8. 25.경 동성아트홀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의 선례가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출품 지원작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다이빙벨’을 2014. 10. 6.경 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0. 2.경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 무렵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소통비서관 및 정무수석실 소속 강일원 행정관 등에게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과 관련하여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통해 국감장에서 상영의 문제점을 성토하도록 하라,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의 전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하여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도록 하라, 부산 의원들을 통해 부산시장에게 영화 상영에 대해 항의도록 하라, 해외공관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라, 대응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김종덕 장관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상영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다이빙벨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경 본격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문체비서관실 신종필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정상원 영상

콘텐츠산업과장과 이순일 사무관 등에게 ‘다이빙벨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 등은 영진위 문봉환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문봉환 부장은 2014. 10. 17.경 영진위가 지원중인 예술전용관 ‘씨네코드선재’ 관계자에게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결국 영진위가 지원중인 수 곳의 예술전용영화관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었다.

영진위는 2014. 11. 6.경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정상원 과장과 이순일 사무관 등으로부터 ‘상영을 혀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 11.경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결과 등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김기춘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였고, 소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일부 예술전용관에 대한 지원중단,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

김상률 교문수석,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은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차년도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고, 김종덕 장관 등을 통해 그 뜻을 영진위에 전하였으나, 일거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영진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14억 6천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砍감토록 조정하여 2015. 4. 30.경 최종 결정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 등을 거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김상률 교문수석과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은, 김종덕 문체부장관 등을 통해 영진위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진위는 심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등과 같이 특정 영화·영화관·영화제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영진위의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와 심사가 필요한 영화진흥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영진위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지시를 직접 수용하거나 영진위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하달된 지시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하여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요구를 관철시켰다.

(5) 도서 관련 지원배제

2014. 7. 30.경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각각 1,000만 원 상당을 출판진흥원이 구매하여 공공

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한편, 출판사가 해당 도서의 저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심사를 거친 후, 그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경 실시된 2차심사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김종덕 장관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협의하여 정부비판 등의 내용이 담기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작가·단체 등이 출판하는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등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 콘텐츠진흥팀장 유신영에게 ‘세종도서 2차심사를 통과한 도서목록을 건네달라’고 요구하여, 그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미라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김미라 행정관은 웹 검색 등을 통하여 5·18 민주화항쟁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등 소위 ‘문제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이를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건네주어 지원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확정하여 김미라 행정관에게 건네주었다.

그 무렵 조윤선 정무수석은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세종도서 선정에 있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좌파성향 저자가 저술한 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김미라 행정관은 이와 같이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친 문제도서 목록을 이승재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고, 이승재 사무관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유신영

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 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4. 11.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하였고, 결국 총 9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 12.경 정관주 소통비서관 등에게 ‘우수도서 선정을 담당하는 출판진흥원 심사위원 선정시, ‘문제도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적 성향을 가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및 문체비서관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015. 7. 28.경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 공고 계획’을 공고하여 2015. 10. 하순경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이승재 사무관은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심사 통과 도서목록을 문체비서관실 김미라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문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쳐 선별된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 등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10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3종(문학분야 8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 목록을 통보받아, 출판진흥원 유신영 팀장 등에게 이를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유신영 팀장 등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11.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총 13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및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정무비서관,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과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 지원심사 등,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심사 등에 각각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VII. KEB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최서원은 2015. 8.경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은행³⁵⁾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서원 본인 및 코어스포츠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지점장인 이상화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이상화로부터

35) 2015. 9. 1.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하여 현재의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으로 출범

예금 인출·송금 등 예금관리 업무,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의 물색 및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최서원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서원은 2015. 11. 초순경 이상화로부터 유럽에 하나은행 총괄법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한 후 이상화를 유럽 총괄법인의 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외환 거래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서원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 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최서원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1. 6. 안종범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정찬우 부위원장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이상화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 설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상화가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최서원은 2015. 11. 하순경 이상화를 국내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독일로의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박근혜에게 이상화가 귀국하면 하나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2015. 11. 하순경 안종범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정찬우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하여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김정태 회장으로부터 12월 말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안종범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김정태 회장은 2016. 1. 7. 하나은행 정기인사에서 이상화를 본부장이 아닌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에 임명하였다.

그 후 최서원은 다시 피고인 박근혜에게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2016. 1. 21. 안종범에게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같은 날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상화를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겠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까"라고 겁을 주면서 화를 냈고, 김정태 회장은 안종범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2016. 1. 23.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유재봉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여 글로벌 영업 그룹장 밑에 1본부장과 2본부장을 신설하여 본부장급 자리 2개를 새로 만든 후 2016. 2. 1. 이상화를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근혜는 최서원, 안종범, 정찬우와 공모하여, 내동령, 경제수석 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정태 회장으로 하여금 이상화를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III. 첨부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부
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1부
3.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부
4. 변호인 선임서 8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그룹명	계열사명	실제 출연일	출연금액(원)	그룹별합계
1	삼성	삼성화재해상보험	2015. 11. 20.	2,500,000,000	12,500,000,000
		삼성물산	2015. 11. 20.	1,500,000,000	
		삼성전자	2015. 11. 20.	6,000,000,000	
		삼성생명	2015. 11. 25.	2,500,000,000	
2	현대차	현대자동차	2015. 11. 20.	4,600,000,000	8,500,000,000
		현대모비스	2015. 11. 23.	2,100,000,000	
		기아자동차	2015. 11. 20.	1,800,000,000	
3	SK	SK하이닉스	2015. 11. 17.	6,800,000,000	6,800,000,000
4	LG	LG디스플레이	2015. 12. 7.	1,000,000,000	4,800,000,000
		LG화학	2015. 12. 7.	3,800,000,000	
5	포스코	포스코	2015. 12. 22.	3,000,000,000	3,000,000,000
6	롯데	호텔롯데	2015. 12. 30	2,800,000,000	2,800,000,000
7	GS	GS리테일	2015. 11. 27.	230,000,000	2,600,000,000
		GS건설	2015. 11. 27.	590,000,000	
		GS E&R	2015. 11. 27.	200,000,000	
		GS홈쇼핑	2015. 11. 27.	100,000,000	
		GS글로벌	2015. 11. 30.	210,000,000	
		GS칼텍스	2015. 11. 30.	630,000,000	
		GS EPS	2015. 11. 30.	360,000,000	
		GS 파워	2015. 12. 2.	280,000,000	
8	한화	한화	2015. 11. 30.	1,500,000,000	1,500,000,000
9	KT	KT	2015. 12. 18.	1,100,000,000	1,100,000,000
10	LS	(주)E1	2015. 11. 26.	1,000,000,000	1,000,000,000
11	한진	대한항공	2015. 11. 24.	1,000,000,000	1,000,000,000
12	CJ	CJ E&M	2015. 11. 13.	800,000,000	800,000,000
13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2015. 11. 20.	300,000,000	700,000,000
		금호타이어	2015. 11. 25.	400,000,000	
14	두산	두산	2015. 11. 20.	700,000,000	700,000,000
15	대림	대림산업	2015. 11. 19.	600,000,000	600,000,000
16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2015. 11. 18.	200,000,000	200,000,000
합계				48,600,000,000원	

* 각 그룹으로부터 재산출연증서를 제출받은 것(재산출연 약속)은 2015. 10. 26.임

범죄일람표 2

순번	그룹명	계열사명	실제 출연일	출연금액(원)	그룹별 합계
1	삼성	제일기획	2016. 2. 26.	1,000,000,000	7,900,000,000
		삼성생명		3,000,000,000	
		에스원		1,000,000,000	
		삼성화재보험		2,900,000,000	
2	현대	기아자동차	2016. 2. 29.	930,000,000	4,300,000,000
		현대모비스	2016. 2. 29.	1,090,000,000	
		현대자동차	2016. 3. 2.	2,280,000,000	
3	SK	SK텔레콤	2016. 2. 24.	2,150,000,000	4,300,000,000
		SK 종합화학	2016. 4. 8.	2,150,000,000	
4	LG	LG CNS	2016. 4. 29.	50,000,000	3,000,000,000
		LG 이노텍		100,000,000	
		LG 디스플레이		760,000,000	
		LG 유플러스		300,000,000	
		LG 생활건강		440,000,000	
		LG 전자		180,000,000	
		LG 하우시스		80,000,000	
		LG 화학		1,090,000,000	
5	롯데	롯데케미컬	2016. 4. 5.	1,700,000,000	1,700,000,000
6	GS	GS EPS	2016. 7. 5.	120,000,000	1,600,000,000
		GS 건설	2016. 7. 5.	190,000,000	
		GS 홈쇼핑	2016. 7. 5.	140,000,000	
		GS E&R	2016. 7. 5.	30,000,000	
		GS 칼텍스	2016. 7. 6.	860,000,000	
		GS 글로벌	2016. 7. 12.	40,000,000	
		GS 파워	2016. 7. 20.	220,000,000	
7	한화	한화생명보험	2016. 6. 29.	1,000,000,000	1,000,000,000
8	KT	KT	2016. 4. 22.	700,000,000	700,000,000
9	LS	LS 산전	2016. 2. 4.	121,200,000	600,000,000
		LS 엠트론	2016. 2. 22.	62,400,000	
		LS 니꼬동체련	2016. 3. 18.	239,400,000	
		LS 전선	2016. 8. 26.	99,600,000	
		가온전선	2016. 3. 18.	25,800,000	
		예스코	2016. 7. 6.	51,600,000	
10	CJ	CJ	2016. 2. 5.	500,000,000	500,000,000
11	신세계	이마트	2016. 6. 30.	350,000,000	500,000,000
		신세계백화점	2016. 4. 20.	150,000,000	
12	부영	부영주택	2016. 2. 17.	300,000,000	300,000,000
13	두산	두산중공업	2016. 5. 16.	400,000,000	400,000,000
14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2016. 2. 17.	100,000,000	100,000,000
15	포스코	포스코	2016. 4. 8.	1,900,000,000	1,900,000,000
합계				28,800,000,000원	

* 각 그룹으로부터 재산출연증서를 제출받은 것(재산출연 약속)은 2016. 1. 12.임

범죄일람표 3

순번	범행일시	문건 제목	공무상 비밀
1	2013. 1. 15.경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중국 특사단 인선 기준 및 대상자
2	2013. 2. 25.경	행정부 조직도 (3안)	새 정부의 행정부 조직도(안) - 국무총리, 감사원, 국가정보원 및 행정 각부 장관 등에 대한 후보자 인선안
3	2013. 2. 28.경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청년위원장 인선 내용
4	2013. 3. 1.경	인사자료(A○○)	청년위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자료 - 학력, 가족, 병역, 범죄경력, 재산 등
5	2013. 3. 1.경	인사자료(B○○)	인사후보자 인사검증자료 - 학력, 가족, 병역, 성향 및 평판 등
6	2013. 3. 1.경	인사자료(C○○)	인사후보자 인사검증자료 - 학력, 경력, 직무수행능력, 성향 및 평판 등
7	2013. 3. 1.경	인선 발표안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발표안
8	2013. 3. 6.경	일본 총리 전화통화 자료	일본 총리와 통화 자료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및 한·일간 현안 문제 논의
9	2013. 3. 6.경	금주 및 다음주 VIP 일정계획(안)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대통령 상세 일정안
10	2013. 3. 6.경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내용
11	2013. 3. 7.경	일일보고사항 (2013. 3. 6.)	대통령의 상세 일정안 및 각 수석비서관실 보고 내용
12	2013. 3. 8.경	한·미 정상회담 및 해외순방 일정 추진(안)	외교부 3급비밀 문건으로 한·미 정상회담 및 해외순방 상세 일정 내용
13	2013. 3. 8.경	창조경제 관련 현장 방문계획(안)	창조경제 관련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일정 및 방문 업체 선정 내용
14	2013. 3. 11.경	제11차 국무회의 자료	국무회의 비공개 부처별 지시사항 및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지시 내용
15	2013. 3. 11.경	법원 조정 수용 여부 검토	민정수석실에서 보고한 언론 보도에 대한 법원 조정 수용여부 검토 내용

순번	범행일시	문건 제목	공무상 비밀
16	2013. 3. 11.경	POO 회장과의 친분 사칭 기업인에 염중 경고	민정수석실에서 보고한 특정인 비위 조사 사실 및 조치 사항
17	2013. 3. 11.경	창조경제 현장 방문 (「사 방문 말씀자료 포함)'	대통령의 특정 상장회사 방문 일정 및 상세한 행사 내용
18	2013. 3. 13.경	차관 인선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 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선안
19	2013. 3. 13.경	경제수석 면담시 지시사항	주가조작, 대기업오너 편법증여, 부당거래를 통한 탈세에 대한 염중 처벌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지시 내용
20	2013. 3. 13.경	민정수석 통화시 지시사항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軍·공직사회 감찰 및 내사 지시 및 사회기강 혼드는 불법사금 융단속 지시 내용
21	2013. 3. 13.경	예술의 전당 이사장 인선안	예술의 전당 이사장 후보자 인선자료
22	2013. 3. 13.경	감사원장 등 인선안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기관장 25명 인선안
23	2013. 3. 13.경	문화재청장 인선안	문화재청장 후보자 관련 정보
24	2013. 3. 13.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관련 정보
25	2013. 3. 18.경	일일보고사항 (2013. 3. 17.)	대통령의 상세 일정 및 각 수석비서관실 보고 내용
26	2013. 3. 18.경	중국 국가 주석 취임 축하전화 건의	한·중 정상간 면담 사실 및 대중국 외교 정책 내용
27	2013. 3. 19.경	국토부장관 보고안건에 대한 경제수석실 검토의견	국토부장관이 현안보고한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경제수석실 검토 내용
28	2013. 3. 20.경	현안 보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세부 계획 내용
29	2013. 3. 20.경	중국 국가주석 과의 통화자료	한·중 정상간 면담 내용 및 대중국 현안 관련 외교 정책 기조 내용
30	2013. 4. 5.경	국정원 2차장, 기조실장 인선안	국정원 2차장 및 기조실장 후보자 명단 및 경력 내용
31	2013. 4. 12.경	NATO 사무총장 접견자료	NATO 사무총장 면담 사실 및 주요 외교 현안 관련 논의 내용
32	2013. 4. 12.경	美국무장관 접견자료	美 국무장관 면담 사실 및 한·미간 주요 현안 의제 관련 논의 내용
33	2013. 4. 12.경	유엔 사무총장 통화 자료	유엔 사무총장 면담 사실 및 북한 문제 관련 고위관계자 접촉 내용

순번	범행일시	문건 제목	공무상 비밀
34	2013. 4. 24.경	부총리 보고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및 현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 개최 내용
35	2013. 8. 4.경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2013. 8. 5.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
36	2013. 10. 2.경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수도권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 후보지 및 선정기준 관련 내용
37	2013. 10. 28.경	대평원 (※순방일정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상세 일정 및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 일정
38	2014. 3. 27.경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드레스덴 연설문)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남북관계 3월 친명 및 모자페키지 사업 추진 등 내용
39	2014. 4. 14.경	계절풍 (※순방일정표)	대통령의 사우디 등 중동국가 순방 상세 일정 및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 일정
40	2014. 4. 29.경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	교문수석실이 보고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및 체육 특기자 입시 전형 관련 개선방안 내용
41	2014. 8. 7.경	북극성 (※순방일정표)	대통령의 미국, 캐나다 등 북미순방 상세 일정 및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 일정
42	2014. 9.~10.경	선인장 (※ 순방일정표)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일정 및 정상회담 등 주요행사 일정
43	2016. 2.~3.경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	교문수석실이 보고한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 내용
44	2016. 2. 24.경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계획(안) - 대외주의-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시 문화행사 상세 일정
45	2016. 2. 26.경	멕시코 문화행사(안) 검토 보고	교문수석실이 보고한 멕시코 순방시 문화행사 상세 일정
46	2016. 2.말경	멕시코 순방(4.2~4.4)시 문화행사 계획(안) 보고	교문수석실이 보고한 멕시코 순방시 문화행사 상세 일정
47	2016. 4.경	로잔 국제스포츠 협력거점 구축현황	교문수석실이 보고한 로잔 국제스포츠 협력거점 구축 추진 현황

범죄일람표 4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1	2015. 9. 14.	10억 8,687만 원 (81만 520 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2	2015. 10. 14.	2억 4,418만 원 (18만 6,887 유로)	정유라를 위한 선수용 차량 3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3	2015. 10. 21.	7억 4,915만 원 (58만 유로)	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 (Salcido)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4	2015. 11. 13.	8,217만 원 (6만 5,830 유로)	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5	2015. 12. 1.	8억 7,935만 원 (71만 6,049 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6	2015. 12. 14.	2억 5,890만 원 (20만 유로)	정유라를 위한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
7	2016. 2. 4.	26억 6,882만 원 (200만 유로)	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 V(VITANA V), 라우싱1233(RAUSING 1233)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
8	2016. 2. 19.	1억 5,929만 원 (11만 7,000 유로)	정유라를 위한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 라우싱1233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
9	2016. 3. 24.	9억 4,340만 원 (72만 3,400 유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대금 명목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일 소재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
10	2016. 7. 26.	7억 2,522만 원 (58만 유로)	"
합계		77억 9,735만 원 (597만 9,686 유로)	

범죄일람표 5

연번	선정발표	대상명	분야	후보자	비고
1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황현산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2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방민호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3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신덕룡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4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김사인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5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최수철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6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정끌별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7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나희덕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8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방현성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9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김탁환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10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시각예술	김장언	민노당 지지, 시국선언
11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연극	차근호	노무현스토리제작비모금, 시국선언
12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연극	안치운	전교조해직교사철회촉구, 김상곤 지지
13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무용	백영태	시국선언
14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무용	김외곤	쇠고기협정폐기촉구, 대운하반대
15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음악	민경찬	적기기논란
16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전통예술	류형선	문익환방북현정
17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서영체	시국선언, 촛불시위
18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임철우	시국선언, 촛불시위
19	2014. 3.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문학	정호승	노무현시민학교강좌, 국정원국기문란비판, 미국규탄성명

범죄일람표 6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병곤	지원배제
2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성장	지원배제
3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종경	지원배제
4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필남	지원배제
5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박석근	지원배제
6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박혜선	지원배제
7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백정희 소설집 발간사업	백정희	지원배제
8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서성란	지원배제
9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서유미	지원배제
10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어둠 속의 니캐> 발간	신동옥	지원배제
11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이성목 시집 발간	이성목	지원배제
12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창작 회곡 <꽃을 바치는 시간>	이윤택	지원배제
13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두부의 각도> 발간	이정화	지원배제
14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가제 「한 숨과 더불어」	이지담	지원배제
15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전석순	지원배제
16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노래를 부르는 세 번의 야침과 세 번의 저녁> 발간	정미경	지원배제
17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장편동화 <지뢰찾기> 발간	조향미	지원배제
18	2014. 11. 11.	2015. 7. 17.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글로리아	황은덕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9	2014. 10. 8.	2014. 11. 1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제36회 서울연극제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
20	2014. 10. 8.	2014. 11. 1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굿바이	극단 백수광부	지원배제
21	2014. 10. 8.	2014. 11. 1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트로이의 여인들- The Refugees	그린피그	지원배제
22	2014. 10. 8.	2014. 11. 1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	극단 완자무늬	지원배제
23	2014. 10. 8.	2014. 11. 1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래빗 훌	조은컴퍼니	지원배제
24	2014. 11. 11.	2015. 3. 31.	(체육)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1차	03.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참가지원	김경미	지원배제
25	2014. 11. 11.	2015. 3. 31.	(체육)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1차	17.쿠바 호세마르띠문학원 참가지원	김정숙	지원배제
26	2014. 11. 11.	2015. 3. 31.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새연극학교-연구 및 비평 프로젝트 '시대횡단' (가제)	서울변방연극제	지원배제
27	2014. 11. 11.	2015. 3. 31.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극단 하땅세의 북미시장 진출 중장기 프로젝트	하땅세	지원배제
28	2014. 11. 11.	2015. 3. 31.	다원예술창작지원	안산순례길 Camino de Ansan	고주영	지원배제
29	2014. 11. 11.	2015. 3. 31.	다원예술창작지원	트로이의 여인들- The Refugees	그린피그	지원배제
30	2014. 11. 11.	2015. 3. 31.	다원예술창작지원	환상통:로	극단서울괴담	지원배제
31	2014. 11. 11.	2015. 3. 31.	다원예술창작지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 법과 자본과 사람의 발견 프로젝트 (가제)	서울변방연극제	지원배제
32	2014. 11. 11.	2015. 3. 31.	다원예술창작지원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5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지원배제
33	2014. 11. 11.	2015. 3. 31.	문화행사및연구지원	한국문학의 현재와 통섭적 대화	(주)실천문학	지원배제
34	2014. 11. 11.	2015. 3. 31.	문화행사및연구지원	문화행사 및 연구지원 <아시아 국가 고전강독 및 비교연구 세미나>	광주전남 작가회의	지원배제
35	2014. 11. 11.	2015. 3. 31.	문화행사및연구지원	맛있는 책읽기	도서출판 도요	지원배제
36	2014. 11. 11.	2015. 3. 31.	문화행사및연구지원	문화비단길 문학콘서트	문화비단길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37	2014. 11. 11.	2015. 3. 31.	문화행사및연구지원	2015남도 해양문학기행	박상건	지원배제
38	2014. 11. 11.	2015. 3. 31.	문화행사및연구지원	문화의 숲에 취하다	생오지 문예창작촌	지원배제
39	2014. 11. 11.	2015. 3. 31.	문화행사및연구지원	출판도시 문학열차	파주북소리 조직위원회	지원배제
40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한불합작 빅토르 휘고의 <그들이 먹을까요? (mangeront-ils?)>	ACC 프로젝트	지원배제
41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일본공연 <만주전선>	극단골목길	지원배제
42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일본 도쿄 공연 <제2회 한일신진우수연출가 작품 초청전>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
43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일본가가와현공연 <물고기의귀향>	연희단거리페	지원배제
44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유럽페스티벌연합 '젊은 축제 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사업 광주 개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배제
45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일본 도쿄, 한국 서울 공연 <모험왕 / 신모험왕>	제12언어연극 스튜디오	지원배제
46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국내공연 <2015 아시아 연출가전>	한국연극연출가 협회	지원배제
47	2014. 11. 11.	2015. 2. 4.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1차	라트비아 국립대학교 아리랑 공연 및 한국음악 워크숍 초청공연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48	2014. 11. 11.	2015. 2. 4.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2015-시각예술창작및 전시공간지원 신선미술관	이지호	지원배제
49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문화in>발간	문화IN	지원배제
50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문화나무> 발간	문화나무	지원배제
51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인수첩> 발간	문화수첩	지원배제
52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발견> 발간	발견	지원배제
53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발견> 발간	발견	지원배제
54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와동화> 발간	시와동화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55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와문화> 발간	시와문화	지원배제
56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문교양지 인디고잉> 발간	인디고서원	지원배제
57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주변인과 문학> 발간	주변인과문학	지원배제
58	2014. 11. 11.	2015. 3. 31.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계간 <시작> 발간	천년의시작	지원배제
59	2014. 11. 11.	2015. 3. 31.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일본 - 쿄토아트센터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참가	윤한솔	지원배제
60	2014. 11. 27.	2015. 1. 21.	(복권) 교정시설순회사업	추격자 (원제: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극단신예	지원배제
61	2014. 11. 27.	2015. 1. 21.	(복권) 교정시설순회사업	명불허전 [안톤체홉의 사랑3]	극단허리	지원배제
62	2014. 11. 27.	2015. 1. 21.	(복권) 교정시설순회사업	형제복지원 생존자 순회 강연 및 공연 프로그램	서울면방연극제	지원배제
63	2014. 11. 27.	2015. 1. 21.	(복권) 교정시설순회사업	세계고전 문학을 연극으로 즐기다(연극 천로역정)	조이피플	지원배제
64	2014. 11. 27.	2015. 1. 21.	(복권) 교정시설순회사업	연극'미싱은 돌아가네'	탐구생활	지원배제
65	2014. 11. 27.	2015. 1. 21.	(복권)군부대순회사업	스트립티즈	극단 터	지원배제
66	2014. 11. 27.	2015. 1. 21.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어르신과 웃고 웃는 '안해'	극단Art-3 씨어터	지원배제
67	2014. 11. 27.	2015. 1. 21.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연극[짬뽕]	극단산	지원배제
68	2014. 11. 27.	2015. 1. 21.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대장 만세	극단연우무대	지원배제
69	2014. 11. 27.	2015. 1. 21.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극 "두꺼비집에는 여우가 살고있다"	협동조합 극단새벽	지원배제
70	2014. 11. 27.	2015. 1. 21.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신명나는 유랑극장 "마당에서 놀자!"	놀이페 신명	지원배제
71	2014. 11. 27.	2015. 1. 21.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배비배비	동승무대	지원배제
72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원치 않은, 나혜석	그린피그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73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하이엔	극단 페아뜨르 고도	지원배제
74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오늘, 식민지로 살다	극단 민예	지원배제
75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지금도가슴설렌다	극단이루	지원배제
76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탈북자의 이야기_리만수 이만수	사단법인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지원배제
77	2014. 11. 27.	2015. 1. 21.	(복권)사회복지시설순 회사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개선과 인권강화를 위한 토론연극 (forum theatre) <찌로와 칠흐>	억압받는사람들 의연극공간-해	지원배제
78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이웃집 쌀통	전문예술단체 극단새벽	지원배제
79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가족음악극<까칠한재석이가 사라졌다>	조은컴퍼니	지원배제
80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유기농 가족극 <붓바람>	하땅세	지원배제
81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꽃다지와 함께 하는 노래만큼 좋은 세상	희망의노래 꽃다지	지원배제
82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2015 행복드림/국악콘서트	(사)경남국악 관현악단휴	지원배제
83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마당극 골생원	극단 집현	지원배제
84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힐링 국악 콘서트 '신명의 소리여행'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85	2014. 11. 27.	2015. 1. 21.	(복권) 임대주택순회사업	다 그렇지는 않았다	(사)예술공장 두레	지원배제
86	2014. 12. 22.	2015. 2. 9.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시범공연-일반)	보석과 여인	조이피플	지원배제
87	2014. 12. 22.	2015. 2. 9.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시범공연-청소년)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조은컴퍼니	지원배제
88	2014. 12. 23.	2015. 2. 4.	(관광)공연예술행사 지원 일반공모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사)예술공장 두레	지원배제
89	2014. 12. 23.	2015. 2. 4.	(관광)공연예술행사 지원 일반공모	공연예술지행사원사업_ 대한민국연극네트워크	동승무대	지원배제
90	2014. 12. 23.	2015. 2. 4.	(관광)공연예술행사 지원 일반공모	2015국제윤이상작곡상 결선연주회 및 시상식	윤이상평화재단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91	2014. 12. 23.	2015. 2. 4.	(관광)공연예술행사 지원 일반공모	2015 신비의 가야왕국, 왕들의 무덤 "능(陵)보러 가자!"	(사)경남국악관 현악단 휴	지원배제
92	2015. 1. 12.	2015. 3.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시범공연)	빈 깅통은 금색의 꿈을 꾸는가	(사)예술공장 두레	지원배제
93	2015. 1. 12.	2015. 3.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시범공연)	능행지희	극단 민예	지원배제
94	2015. 1. 12.	2015. 3.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시범공연)	변두리 로맨스	극단 차이무	지원배제
95	2015. 1. 12.	2015. 3.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시범공연)	生	극단 Art-3씨어터	지원배제
96	2015. 1. 12.	2015. 3.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시범공연)	연극 [설풀]	극단산	지원배제
97	2015. 1. 12.	2015. 3.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시범공연)	춘향이네 뒷방이야기	사단법인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지원배제
98	2015. 1. 12.	2015. 3.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시범공연)	봄에 부는 바람	재인촌 우듬지	지원배제
99	2015. 1. 30.	2015. 3. 6.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이웃집쌀통 & 세상을향해 외치다!	전문예술단체 극단새벽	지원배제
100	2015. 2. 25.	2015. 4. 21.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1차)	한남 아트월 프로젝트	정형탁	지원배제
101	2015. 2. 25.	2015. 4. 21.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1차)	울산 리틀아티스트페어	지앤갤러리	지원배제
102	2015. 3. 11.	2015. 6. 2.	AYAF-공연예술 (창작자)	P-NAF(P-Networking Arts Festival)	이길준	지원배제
103	2015. 3. 16.	2015. 6. 5.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우수작품제 공연)	경성스타	연희단거리페	지원배제
104	2015. 3. 16.	2015. 6. 5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우수작품제 공연)	그 봄, 한 낮의 우울	조은컴퍼니	지원배제
105	2015. 3. 25.	2015. 6. 17.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무제	조형준	지원배제
106	2015. 3. 26.	2015. 6. 30.	(체육)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2차	(기획형) 이탈리아 로마 라사피엔자대학교 레지던시 참가	김미월	지원배제
107	2015. 3. 26.	2015. 6. 30.	(체육)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2차	(기획형) 극지연구소협력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 참가	천운영	지원배제
108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큰들 & 로온 문화예술교류	큰들 문화예술센터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09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EXTRAS' 유럽 3개국 투어	홍성민	지원배제
110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한중공동제작프로젝트<Between>한중공연	나우무용단	지원배제
111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제81차 캐나다 국제PEN대회	(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지원배제
112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2015 한국전통민속예술 중국 순회공연	(사)민족미학 연구소	지원배제
113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 미래세대에게 아리랑 심기 프로젝트 <아리랑,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다>	(사)한국전통 문화예술원	지원배제
114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말레이시아 사바 국제민속축제 초청 공연	사)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 과천지부	지원배제
115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한국, 인도, 아일랜드 예술가 콜라보레이션 "TA! TE! TAP!"(P.E.A.C.E.)	인도를 생각하는 예술인모임	지원배제
116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국립 미술관 <2015 국제 메조틴트 페스티벌>	김승연	지원배제
117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서울 5개국 협력 소수자 인권전 및 국제포럼	도와지	지원배제
118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중국 북경 올렌스 현대미술센터(UCCA) 초청 양혜규 개인전	양혜규	지원배제
119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볼리비아 수교 50주년, ITI회원국 가입 자문회의	국제극예술협회 (ITI)	지원배제
120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일본 도쿄 우에노 스토어하우스 초청공연 '경숙이, 경숙아버지'	극단골목길	지원배제
121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한·중 아시아 국제프로젝트_한중공연	김천국제가족연 국제추진위원회	지원배제
122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6·15공동선언기념 15주년기념행사 <어서가자 통일의 나라로> 일본공연	놀이페 신명	지원배제
123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아시아 10개 도시 예술전문가 서울 초청 포럼_국내개최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
124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모험왕 / 신모험왕>_국내공연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지원배제
125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깃본우리질문날> 일본 도리노연극제 초청공연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26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극단 하떻세 '붓바람' 영국 킹스톤 페스티벌과 중국 쿠치앙극장 초청	하떻세	지원배제
127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연극 - 전장에서의 피크닉 (일본 아시아 연출가 페스티벌 2015)	한국연극연출가 협회	지원배제
128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말레이시아 KL International Arts Festival 초청공연 "대천명(大天命)"	(사)민족음악원	지원배제
129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 미래세대에게 아리랑 심기 프로젝트 <아리랑,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다>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지원배제
130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한국, 몽골, 러시아브리아트 공화국 국제문화포럼 "Tree of Culutre 2015"	사단법인 문화다음	지원배제
131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한국, 인도, 아일랜드 예술가 콜라보레이션 "TA! TE! TAP!"(P.E.A.C.E.)	스와라인디아	지원배제
132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이북5도 민속문화 포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연합회	지원배제
133	2015. 3. 26.	2015. 6. 3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터키 파묵칼레 세계전통무용축제 초청공연 "The korean festival-인천아라리"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134	2015. 3. 26.	2015. 6. 3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2차	김정은 댄스프로젝트 핀란드 리자노요넨 레지던스 참가	김정은	지원배제
135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	(사)문화창작 집단공터다	지원배제
136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기획전문인력지원	(사)예술공장 두레	지원배제
137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2015년 공연예술분야 기획및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극단연우무대	지원배제
138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연희단거리페 경영인력 지원사업	연희단거리페	지원배제
139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2015공연예술분야 기획 경영 전문인력 지원	하并不意味	지원배제
140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2015 공연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학전	지원배제
141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2015공연기획및전문인력지원 사업-협동조합극단새벽	협동조합 극단새벽	지원배제
142	2015. 3. 31.	2015. 6. 30.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2015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운영지원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43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문화창작 집단공터다	지원배제
144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2015년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극단연우무대	지원배제
145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극단이루	지원배제
146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인력지원	연희단거리패	지원배제
147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조은컴퍼니	지원배제
148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학전	지원배제
149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2015 무대인력지원사업	협동조합 극단새벽	지원배제
150	2015. 3. 31.	2015. 6. 2.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무대 예술전문인력뱅크)	김소희	지원배제
151	2015. 6. 3.	2015. 8. 5	(체육)2015문화전문인 력양성 및 배치사업- 민간단체지원	2015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사)예술공장 두레	지원배제
152	2015. 6. 13.	2015. 7. 8.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극장	지원배제
153	2015. 6. 13.	2015. 7. 8.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하퍼리건	극단 산수유	지원배제
154	2015. 6. 13.	2015. 7. 8.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서울 특별한 병구씨	다빈나오	지원배제
155	2015. 6. 13.	2015. 7. 8.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인권연극제	인권연극제	지원배제
156	2015. 7. 20.	2015. 12. 4.	창작뮤지컬육성지원 (대본공모)	금오(金鳥)	(사)문화창작 집단공터다	지원배제
157	2015. 7. 20.	2015. 12. 4.	창작뮤지컬육성지원 (대본공모)	그대 내 마음 안다면	(사)문화창작 집단공터다	지원배제
158	2015. 7. 20.	2015. 12. 4.	창작뮤지컬육성지원 (대본공모)	스프링(spring)	극단산	지원배제
159	2015. 7. 31.	2015. 12.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대본공모)	원 파인 데이	민복기	지원배제
160	2015. 7. 31.	2015. 12.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대본공모)	선풀	윤정환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61	2015. 7. 31.	2015. 12. 4.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연극·대본공모)	아비	장성희	지원배제
162	2015. 8. 3.	2015. 9. 22.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오거리 사진관	극단 페아뜨르 고도	지원배제
163	2015. 8. 3.	2015. 9. 22.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바람난 삼대	극단 차이무	지원배제
164	2015. 8. 3.	2015. 9. 22.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수화와 해설로 보는 연극 [짬뽕]	극단산	지원배제
165	2015. 8. 3.	2015. 9. 22.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의자는 잘못없다	전문예술단체 극단새벽	지원배제
166	2015. 8. 3.	2015. 9. 22.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유기농 가족극 <붓바람>	하땅세	지원배제
167	2015. 8. 3.	2015. 9. 22.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2015 행복드림/국악콘서트(가.무. 악공연)	(사)경남국악 관현악단휴	지원배제
168	2015. 8. 3.	2015. 9. 22.	(추경)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생생(生生) 국악콘서트 "신명의 소리여행"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169	2015. 8. 3.	2015. 9. 22.	(추경)학교순회사업	넌벼별 타악 퍼포먼스 <아라리 아라리요>	극단 집현	지원배제
170	2015. 8. 3.	2015. 9. 22.	(추경)학교순회사업	창작마당극 <착한사람 김삼봉>	(사)예술공장 두레	지원배제
171	2015. 8. 3.	2015. 9. 22.	(추경)학교순회사업	연극 [오월엔 결혼할꺼야]	나온컬쳐	지원배제
172	2015. 8. 3.	2015. 9. 22.	(추경)학교순회사업	뮤지컬 [날개잃은천사]	조이피플	지원배제
173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공터에서 행복해지DA	(사)문화창작 집단공터다	지원배제
174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계릴라극장 운영	계릴라극장	지원배제
175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열정과 창조 그리고 글로벌"	극단 페아뜨르 고도	지원배제
176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2015년도 연극 분야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 소극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극단 Art-3씨어터	지원배제
177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겨울 밤 어린이 연극 작은 극장	극단학마을	지원배제
178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소극장 힘세상 공존을 위한 첫걸음	극단 함께사는세상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79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 소극장운영 활성화 지원	극단허리	지원배제
180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연극분야)	나온궐쳐	지원배제
181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2015년 연극_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_동승무대	동승무대	지원배제
182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3년동안30편의상설공연 - Play 30 Project	제인춘 우듬지	지원배제
183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소극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예술단체 극단새벽	지원배제
184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2015년 연극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조이피플-	조이피플	지원배제
185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기분좋은 JOB수다	주식회사 극단 기분좋은극장	지원배제
186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천원으로 행복한 하루, 토크국악콘서트	(사)경남국악 관현악단휴	지원배제
187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문화예술나눔터 아이원 기획공연 지원	(사)한국전통 문화예술원	지원배제
188	2015. 8. 5.	2015. 10. 27.	(체육)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국악전용극장 잔치마당 운영 "광대들의 놀음판"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189	2015. 9. 18.	2015. 9. 25.	(국고,추경)공연티켓 1+1 지원사업(2차)	파리대왕	하땅세	지원배제
190	2015. 11. 3.	2015. 11. 10.	(국고,추경)공연티켓 1+1 지원사업(3차)	두뇌수술	그린피그	지원배제
191	2015. 11. 30.	2016. 2. 4.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이탈리아 피렌체 '빌라 로마니' 전시 및 워크숍	김재연	지원배제
192	2015. 11. 30.	2016. 2. 4.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2016 국제미술대표작가전	평화미술협회	지원배제
193	2015. 11. 30.	2016. 2. 4.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씨름사절단> 유럽 순회공연	극단양상불	지원배제
194	2015. 11. 30.	2016. 2. 4.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미국 샌디에고 2016 한국문화페스티벌 초청공연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195	2015. 11. 30.	2016. 2. 4.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우붓 그리고 코리아(ubud and korea)	화성 열린문화터	지원배제
196	2015. 12. 15.	2016. 2. 26.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다문화다문화 순회콘서트	창작21작가회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197	2015. 12. 15.	2016. 2. 26.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연극 <아리랑 랩소디>	극단 진일보	지원배제
198	2015. 12. 15.	2016. 2. 26.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눈물	극단서울공장	지원배제
199	2015. 12. 15.	2016. 2. 26.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어른과 아이가 함께보는 가족극 산 너머 개똥아	연희단거리페	지원배제
200	2015. 12. 15.	2016. 2. 26.	(복권) 농산어촌순회사업	돌아온 박침지<노마드>	극단사니너머	지원배제
201	2015. 12. 15.	2016. 4. 1.	(복권)문화사각지대 빌글프로그램	문화가 꽂피는 도서산간 페스티벌	하이킥	지원배제
202	2015. 12. 15.	2016. 4. 1.	(복권)문화사각지대 빌글프로그램	얼씨구나 좋구나 신명나는 우리문화	(사)마당극페 우금치	지원배제
203	2015. 12. 15.	2016. 4. 1.	(복권)문화사각지대 빌글프로그램	산업단지, 예술을 품다!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204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탭댄스와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채즈툰업!!	하이킥	지원배제
205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런닝머신타는 남자의 연애생생 프로젝트	공상집단뚱딴지	지원배제
206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들려주는 무대 <어쩌면>	극단북새통	지원배제
207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연극 <망우리 만복이>	예술집단 페테	지원배제
208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그림자와 함께하는 오페리아의 그림자극장	은세계씨어터 컴퍼니	지원배제
209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호랑이를 만난 놀부	소명	지원배제
210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국악 콘서트 <신명의 소리여행>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211	2015. 12. 15.	2016. 2. 26.	(복권) 임대주택순회사업	리을무용단 춤놀음, 2016 춤으로 차린 밥상	리을춤연구원	지원배제
212	2015. 12. 15.	2016. 2. 26.	(복권)학교순회사업	환상통:로	극단서울괴담	지원배제
213	2015. 12. 15.	2016. 2. 26.	(복권)학교순회사업	동요콘서트 구름빵	(주)문화아이콘	지원배제
214	2015. 12. 15.	2016. 2. 26.	(복권)학교순회사업	연극 [허튼 웃음]	극단산	지원배제
215	2015. 12. 15.	2016. 2. 26.	(복권)학교순회사업	유기농 가족극 봇바람	하땅세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216	2015. 12. 23.	2016. 1. 19.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극단 하땅세	하땅세	지원배제
217	2015. 12. 23.	2016. 1. 19.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광주연극협회 문화예술기관 단원연수지원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지원배제
218	2015. 12. 23.	2016. 1. 19.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연수단원 지원사업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219	2016. 1. 6.	2016. 2. 5.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홍준씨는 파라오다	극단 놀땅	지원배제
220	2016. 1. 6.	2016. 2. 5.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궤짝	극단 대학로극장	지원배제
221	2016. 1. 6.	2016. 2. 5.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극단작은신화창단30주년기념 공연<방화범들>	극단 작은신화	지원배제
222	2016. 1. 6.	2016. 2. 5.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인톤체홉의 사랑3	극단 허리	지원배제
223	2016. 1. 15.	2016. 2. 25.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사)밀양연극촌	지원배제
224	2016. 1. 15.	2016. 2. 25.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서울 금 국제 어린이 텐트 극장 페스티벌	하땅세	지원배제
225	2016. 1. 15.	2016. 2. 25.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2016 서울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지원배제
226	2016. 1. 15.	2016. 2. 25.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전북도민과 문화관광객(농민) 을 위한 방송사 특집공연 등	(사)소충사선문 화제전위원회	지원배제
227	2016. 1. 15.	2016. 2. 25.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제21회 필봉마을굿축제	임실필봉 농악보존회	지원배제
228	2016. 1. 29.	2016. 3. 31.	연극 창작산실 (일반)-시범공연	에어콘 없는 방	극단 백수광부	지원배제
229	2016. 1. 29.	2016. 3. 31.	연극 창작산실 (일반)-시범공연	이윤택 신작 <꽃을 바치는 시간>	연희단거리패	지원배제
230	2016. 2. 19.	2016. 5. 4.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대개 여한은 없다.	극단 백수광부	지원배제
231	2016. 2. 19.	2016. 5. 4.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슈가 캔디 마운틴 (동물농장)	하땅세	지원배제
232	2016. 3. 4.	2016. 5. 4.	(공모)장애인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수화발표회 "Always a dream"	실로암수화 중창단	지원배제
233	2016. 3. 4.	2016. 5. 4.	(공모)장애인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지원	제26회 하나된소리 "그래도, 우리 함께 꿈꾸자"	(사)실로암 사람들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234	2016. 3. 4.	2016. 5. 4.	(공모)장애인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지원	2016 희망의 소리와 몸짓	드림댄스 휠예술단	지원배제
235	2016. 3. 4.	2016. 5. 4.	(공모)장애인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지원	2016 송복시리즈 <人 프로포즈> 빨간	(사)한국장애 예술인협회	지원배제
236	2016. 3. 4.	2016. 5. 4.	(공모)장애인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장애인예술인 양성프로젝트 "이제는 예술이다"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지원배제
237	2016. 3. 4.	2016. 5. 4.	(공모)장애인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한국장애인문화 정체성 확립과 경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장애 예술인협회	지원배제
238	2016. 3. 11.	2016. 5. 2.	기간문화단체지원	2016 미주 한국문학아카데미	한국문예창작회	지원배제
239	2016. 3. 18.	2016. 5. 24.	연극 창작산실(일반 및어린이청소년) -우수제공연	연극 <도둑맞은 책>	(주)문화아이콘	지원배제
240	2016. 3. 18.	2016. 5. 24.	연극 창작산실(일반 및어린이청소년) -우수제공연	극단백수광부 창단20주년 + 배우 오현경 80세 기념공연 <봄날>	극단 백수광부	지원배제
241	2016. 3. 18.	2016. 5. 24.	연극 창작산실(일반 및어린이청소년) -우수제공연	붓바람	하땅세	지원배제
242	2016. 3. 18.	2016. 5. 24.	창작뮤지컬육성 (우수제공연)	약산아리랑	(사)밀양연극촌	지원배제
243	2016. 3. 18.	2016. 5. 24.	창작뮤지컬육성 (우수제공연)	두리등실 등계공향	주식회사 뮤지컬구름빵	지원배제
244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캄보디아 대지미술전	사단법인 왕산	지원배제
245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히로시마 내사랑	극단드림플레이	지원배제
246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한일 청년 연극 공동제작 <최고의 자살 SHOW>	극장씨어터제로	지원배제
247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2016 경기인형극제 in Suwon	사단법인 경기 인형극진흥회	지원배제
248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영국 버밍엄 ON THE EDGE FESTIVAL 축제 초청공연 <BRUSH> (붓바람)	하땅세	지원배제
249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제10회 광주일본 (북해도)연극 교류 사업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지원배제
250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베트남에부는 아리랑한류 K-아리랑	강원민예총 국악협회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251	2016. 3. 31.	2016. 6. 7.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아리랑으로 통하는 미국 & 멕시코” 2016 한국문화 페스티벌 초청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252	2016. 5. 23.	2016. 6. 27.	한-영 리서치지원	2017 극단 하땅세 & 유니콘 씨어터 협력제작공연 Animal Farm in UK를 위한 사전 리서치	하땅세	지원배제
253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주)문화아이콘	지원배제
254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주)연우무대	지원배제
255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문화예술교육 더베프(구 어린이문화예술 학교)	지원배제
256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2016년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주식회사 극단 기분좋은극장	지원배제
257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기획 경영 전문인력 지원	하땅세	지원배제
258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2016공연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사업	거창 우리문화연구회	지원배제
259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사)한국전통연 희단체총연합회	지원배제
260	2016. 5. 24.	2016. 6. 29.	공연기획및경영전문 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지원배제
261	2016. 5. 24.	2016. 6. 29.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주)연우무대	지원배제
262	2016. 7. 22.	2016. 9. 21.	음악.오페라창작산실- 음악(오작교프로젝트)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전주시청	지원배제
263	2016. 7. 22.	2016. 9. 21.	음악.오페라창작산실- 음악(오작교프로젝트)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성남시	지원배제
264	2016. 7. 22.	2016. 9. 21.	음악.오페라창작산실- 음악(오작교프로젝트)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	충청북도	지원배제
265	2016. 8. 31.	2016. 9. 26.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나는 왕이로소이다	극단 성	지원배제
266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강성은	지원배제
267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김사람(김진호)	지원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268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김성규	지원배제
269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백가흠	지원배제
270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손홍규	지원배제
271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신용록	지원배제
272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이안	지원배제
273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조해진	지원배제
274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한용국	지원배제
275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한정영	지원배제
276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황인찬	지원배제
277	비공모	2015. 11. 12.	주목할만한작가상	주목할만한작가상	황정은	지원배제
278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정무정	선정배제
279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강은교	선정배제
280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고봉준	선정배제
281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구보룡	선정배제
282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권성우	선정배제
283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권희철	선정배제
284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김나영	선정배제
285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김상욱	선정배제
286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김승희	선정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287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김형중	선정배제
288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나희덕	선정배제
289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박범신	선정배제
290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박성원	선정배제
291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복효근	선정배제
292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송종원	선정배제
293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신지영	선정배제
294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신형철	선정배제
295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안현미	선정배제
296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양윤의	선정배제
297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유성호	선정배제
298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유성호	선정배제
299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윤대녕	선정배제
300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은희경	선정배제
301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이명재	선정배제
302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이문재	선정배제
303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이승우	선정배제
304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이승하	선정배제
305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이안	선정배제
306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이재복	선정배제

연번	공모마감	선정발표	지원사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자(대상자)	비고
307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임영천	선정배제
308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장이지(장이수)	선정배제
309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정여울	선정배제
310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정영훈	선정배제
311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정홍수	선정배제
312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조강석	선정배제
313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진은영	선정배제
314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차미령	선정배제
315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최윤정	선정배제
316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최현식	선정배제
317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함돈균	선정배제
318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함성호	선정배제
319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허윤진	선정배제
320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황종연	선정배제
321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최재봉	선정배제
322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송영국	선정배제
323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이건용	선정배제
324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전인평	선정배제
325	비공모	2016. 연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선정	최상화	선정배제

범죄일람표 7

연번	일시	대상	지원배제 등	비고
1	2014. 8. 25.경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	정액지원금(전년도 정액지원금 65,700,000원) 지원배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2	2014. 11. 6.경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요청 거부	
3	2015. 3.경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영화관 임차료(전년도 5,000만 원) 지원배제	영화 자가당착 상영
4	2015. 3.경	아리랑시네마센터	위탁사업 지원금(전년도 1억 원) 지원배제	영화 다이빙벨 상영
5	2015. 4. 30.경	부산국제영화제	2014년 14억 6천만 원에서 2015년 8억 원으로 지원금砍감	영화 다이빙벨 상영
6	2015. 9.경	연출자 박찬경 - 공모작품 산	2015년 예술영화 지원사업(지원금 9억 5,000만 원) 지원배제	야권 지지자 박찬욱 감독의 동생, 진보성향
7	2015. 9.경	연출자 이송희일 - 제작사 시네마달 - 공모작품 연인들	2015년 예술영화 지원사업(지원금 9억 5,000만 원) 지원배제	영화 다이빙벨 제작사, 연출자의 진보성향
8	2015. 9.경	연출자 오멸 - 공모작품 바당감수팡	2015년 예술영화 지원사업(지원금 9억 5,000만 원) 지원배제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연출, 연출자의 진보성향

범죄일람표 8

연번	구분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2014년도	소설	소년이 온다	(주)창비	한강
2	2014년도	시	겨울나기	(주)도서출판 삼인	이수호
3	2014년도	시	그리운 나무	(주)창비	정희성
4	2014년도	시	기룬 어린 양들	푸른사상사	맹문재
5	2014년도	시	봄눈	도서출판 b	김병섭
6	2014년도	시	영통의 기쁨	서정시학	박희진
7	2014년도	시	창촌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실천문학사	신동호
8	2014년도	시	체 계바라 만세	실천문학사	박정대
9	2014년도	소설	검은 문, 하얀 바람	산아출판사	정창근
10	2015년도	수필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	분도출판사	공지영
11	2015년도	시	A형 기침	도서출판 북인	정안나
12	2015년도	시	금정산을 보냈다	산지니	최영철
13	2015년도	시	꿈결에 시를 베다	실천문학사	순세실리아
14	2015년도	시	슬픔에게 무릎을 끓다	실천문학사	이재무
15	2015년도	시	집에 가자	삶창	김해자
16	2015년도	소설	단 한 번의 사랑	(주)해냄출판사	김홍신
17	2015년도	소설	어우동, 사랑으로 죽다	(주)해냄출판사	김별아
18	2015년도	철학/심리학/윤리학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꾸리에북스	이진경
19	2015년도	철학/심리학/윤리학	파농	(주)도서출판 한길사	이경원
20	2015년도	사회과학	사회적 인간의 몰락	(주)이학사	김윤태
21	2015년도	사회과학	자공공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조한혜정
22	2015년도	문학(교양)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례출판	김기성 외 120인